학칙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호서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사관리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양성평등) ① 본 대학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개정 2020. 3. 16.)

1. 전 구성원에게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등 성차별에 관한 교육자료 비치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3. 기타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01. 3. 26)

[제목개정 2020. 3. 16.]

제3조의 2 (입학자격)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3. 3. 1)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의 3 <삭제 2016. 3. 1>

제2장 입학 및 재·편입학

제 1 절 신 입 학 (개정 2013. 3. 1)

제4조 (입시관리) ① 입학전형의 기본계획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00. 6. 1)

② <삭제 2016. 3. 1>

③ <삭제 2016. 3. 1>

제4조의 2 <삭제 2016. 3. 1>

제5조 (입학사정원칙) ① 신입학생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자료의 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순위에 따라 전형별로 사정한다.
2. 면접은 점수 또는 P(합격)·F(불합격)로 사정할 수 있다.
3. 시험 시 부정행위자, 면접 미 응시자 등은 불합격처리한다.
4.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총장이 정한다.

② 체육특기자에 대한 입학사정원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01. 3. 26)

제 2 절 편 입 학

제6조 (편입학 사정원칙) 편입학자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1)

1. 입학전형자료의 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 순위별로 사정한다.
2. 면접은 점수 또는 P(합격)·F(불합격)로 사정할 수 있다.

3. 시험 시 부정행위자, 면접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4. 기타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정원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7조 (구비서류 및 합격취소) ① 합격생에 대한 구비서류의 내용, 제출기일 및 장소는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한다.

② 구비서류 및 등록금을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제8조 (편입학 자격) ① 본 대학교의 편입학자격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전부개정 2014. 9. 1)

② <삭제 2014. 9. 1>

제9조 (편입학 지원) 편입학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1)

1. 편입학원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부
2.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총 취득학점 및 총 평점평균 기재) 1부
3.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재학·재적)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4. 전적대학에 편입학하였던 자는 그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제10조 <삭제 2018. 9. 4>

제 3 절 재 입 학

제11조 (재입학 전형 기준)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계열별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2. 28, 2017. 9. 1)

③ 학부 내 여석이 있는 전공을 우선 선발한다. 단, 학부 내 동 전공과 학년에서 재입학 정원이 넘었을 때는 고학년과 성적순으로 한다. (신설 2003. 3. 24)

④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관련학과는 모집 단위별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설 2007. 2. 28)

⑤ 정원 산정에 있어 주·야간 정원 내·외는 구분한다. (신설 2007. 2. 28)

⑥ 재입학자는 입학과 함께 개강 30일 이내에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

⑦ 재입학하는 학생은 최초 입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

[제목변경 2016. 3. 1]

제 3 장 전공선택·배정 및 변경

제 1 절 전공선택 및 배정

제12조 (적용범위) ① 신입생을 학부단위로 통합 모집한 학부, 세부 전공을 통합 모집한 전공 또는 학생 스스로 설계한 전공(학생설계전공)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3. 1)

② 전공은 본인이 소속한 학부(전공)내 또는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5, 2024. 3. 1)

제13조 (전공배정) ① 각 학부에 전공배정을 위하여 전공심사·배정위원회(이하 “전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시행한다.

② 전공위원회는 학부에 소속한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부장이 지명한다.

③ 전공위원회는 학생의 전공 선택 신청서를 심의하여 전공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④ 당해 학부장이 중심이 되어 전공교수는 재학생의 합리적인 전공 선택을 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전공선택 신청 및 배정시기) ① 학생은 지망전공을 2 이상 선택한 후 소정양식에 지망순위를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공선택 시기는 1학년 2학기말 또는 2학년 2학기말로 하되, 신청 및 배정 시기는 소속 학부의 전공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전공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휴학하는 학생으로서 전공배정 신청일 이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휴학하여야 하며 전공배정 결과를 교무처 학사팀으로 확인한다.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학부 전공배정위원회에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03. 3. 24, 2016. 3. 1)

④ 재입학생이 전공미배정인 경우 재입학 원서 제출 시에 전공배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1, 개정 2003. 3. 24, 2013. 3. 1)

⑤ <삭제 2002. 2. 25>

제15조 (전공배정 원칙) ① 학생이 신청한 지망전공을 지망한 순위대로 배정한다.

② 지망전공이 특정 전공분야에 편중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까지의 전(全)학기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단,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전공과목, 전공기초, 대학기초, 기본교양 또는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의 성적순, 그리고 신청학점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 3. 1, 2013. 3. 1, 2017. 3. 1, 2020. 3. 1)

③ 전공별 배정인원 비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999학년도 : 최대 120%, 최소 85%
2. 2000학년도 : 최대 130%, 최소 80%
3. 2001학년도 : 최대 140%, 최소 75%
4. 2002학년도 : 최대 150%, 최소 70%
5. 2003학년도 : 최대 160%, 최소 65%
6. 2004학년도 이후 : 전공 선택 자율화에 따라 2003학년도 수준에서 전공별 배정인원비율은 전공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6, 개정 2003. 3. 24)

④ <삭제 2014. 3. 1>

제16조 (전공확정 및 통보) ① 전공이 배정되면 전공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공배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되며, 수강신청 전까지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 2 절 전 공 변 경(전과) (개정 2012.3.1)

제17조 (학부·학과·전공 변경 절차) ① 학부·학과·전공 변경 신청자는 소정의 원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고, 학사팀은 다음 각 호 1의 절차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2, 2012. 3. 1, 2013. 3. 1, 2017. 3. 1, 2020. 3. 1)

1. 학사팀은 신청자의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장에게 신청자의 학번, 성명, 지원 학부·학과·전공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당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면담결과 또는 의견을 학사팀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2. 학사팀은 신청자의 원서와 전학년 성적을 지원 학부·학과·전공에 송부하고, 지원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서면 또는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사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교무처장은 1호 내지 2호에 의해 접수된 결과를 심사한 후 학부·학과·전공 변경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학과 및 전공변경 신청은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10. 2. 22, 2016. 3. 1)

③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미래융합대학, 국제학부로의 전공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2. 28, 개정 2014. 3. 1., 2022. 8. 25, 2024. 3. 1)

④ 학과 및 전공 변경은 신입학생은 2학기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편입학생은 입학 후 1학기 수료이상인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이수학기를 산정할 때에는 전과 신청일 현재 이수 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0. 2. 22, 개정 2012. 3. 1, 2016. 3. 1, 2020. 3. 1)

⑤ 신청자가 학칙 부칙에서 정한 학사구조개혁 대상 학부·학과·전공에 속한 경우에는 전과 학기 및 입학구분과 상관없이 예외로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 개정 2017. 3. 1, 2020. 3. 1)

제 4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8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3. 24, 2019. 3. 1)

1. 가정 사정, 질병,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2.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자 단, 미제출자는 제적된다.
3. 입학 후 1년간은 질병, 입대사유 이외의 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
4. 편입학, 재입학하여 최초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질병휴학 및 군입대 휴학 이외는 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4학기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의 경우 자녀당 4학기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단,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중 1회에 한하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휴학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 2014. 3. 1, 2014. 9. 1, 2019. 3. 1)

③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2. 28, 2012. 3. 1, 2014. 3. 1, 2019. 3. 1)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2. 휴학사유서 1통(질병일 때는 질병명, 질병분류번호 및 30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된 병원 발행 진단서, 창업에 의한 경우는 창업관련 증빙서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기타는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 (개정 2023. 2. 6)

④ 휴학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개정 2003. 3. 24, 2007. 2. 28)

1. 휴학원서는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등록기간 경과후의 휴학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한다.
3. 휴학원서는 중앙도서관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휴학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당초 휴학원서 제출절차에 따른다.

제19조 (군입대 휴학) ①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산업체기능요원을 포함한다)는 군입대 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6)

② 휴학기간은 군입대 기간(장기하사는 제외)동안으로 한다. (개정 2003. 3. 24)

③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2. 입영명령서 사본 1통

④ 휴학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개정 2003. 3. 24, 개정 2016. 3. 1)

1. <삭제 2023. 3. 1>
2. <삭제 2023. 3. 1>
3. 휴학원서는 중앙도서관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일반휴학 중인 자가 입대하는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한다.
5. 소집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종합행정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 26)

제20조 (휴학기간 중 복학) 휴학 중인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제21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3. 24)

1. 복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병적확인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제22조 (자퇴)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서를 학과(부)장과 중앙도서관장을 경유하여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3. 24, 2007. 2. 28, 2011. 5. 12)

제23조 (제적)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칙 제33조 해당자와 중도 탈락이 되는 자는 제적하고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07. 2. 28)

제5장 교 육 과 정

제24조 (교육과정의 편성원칙) ①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에 따른 교육실현을 위하여 교양 및 전공 교육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한다. (개정 2017. 3. 1, 2020. 3. 16.)

②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대학, 학부(학과)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각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의 연계성을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신설 2017. 9. 1, 개정 2020. 3. 1, 2020. 3. 16.)

③ 교양과정은 인성, 기초역량, 창의적 융합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개정 2011. 3. 1, 2012. 3. 1, 2013. 3. 1, 2017. 3. 1.)

④ 교양과목은 1~5학년에 걸쳐 분산 이수하도록 한다.

⑤ 유사한 전공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통합한다. (개정 2013. 3. 1, 2017. 3. 1.)

⑥ 각 계열별 전공교육과정의 실험실습(실기)과목의 비율은 대학의 인재상, 사회 인력 수요 및 학부, 학과 및 전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 9. 1)

⑦ 교육과정 편성지침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6. 1)

⑧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과(부)는 대학 교육편성지침을 따르는 일반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며, 심화프로그램 진입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인정된다. 단,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8, 개정 2009. 3. 1, 2015. 9. 1, 2017. 9. 1)

제24조의2(교육과정 개발) ①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개정 2020. 3.

1)

1. 대학의 설립정신, 교육목적, 교육목표
2. 대학의 인재상·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교육과정
3. 학부(과)의 인재상·전공역량과 연계된 전공교육과정
4. 인력수급전망
5. 산업동향(국가산업, 지역사업의 고용동향 등) 및 산업체(관련기관) 현황과 요구
6. 학문동향
7. 학부(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국가자격증
8. 졸업생, 재학생의 진로(직무)분석 및 요구
9. 전년도 교육과정 분석 및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② <삭제 2020. 3. 1>

③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교과목별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의 연계성을 교육과정편성시 표기한다. (개정 2020. 3. 1)

[본조신설 2018. 3. 1]

제24조의3(교육과정 개편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발·검토한 안건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편한다. (개정 2022. 8. 25.)

②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은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개발한 안을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한다. (개정 2022. 8. 25.)

[본조신설 2018. 3. 1]

제24조의4(교육과정 개편 및 주기) ① 교육과정의 개편이라 함은 교과목의 폐지, 교과목의 신설, 교과목의 변경(교과목명, 학점, 이수학기, 시수 등)에 의하여 전년도 교육과정 대비 당해 연도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②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학문적・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우, 학사구조개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편하며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해 1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3. 1)

③ 필수 교과목을 폐지할 경우에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양교과목을 전공교과목으로 또는 전공교과목을 교양교과목으로 대체 지정할 수 없다.

④ 교육과정 개편 시 교양 및 전공별로 그 이유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교육과정개편안을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와 함께 각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처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편성 시와 동일하다.(개정 2020. 3. 16., 2022. 8. 25.)

1. 개편사유와 주요내용
2. 교육과정 개편안
3. 신・구 교과목 대비표 1부.
4. 개편되는 교육과정 편성표 1부.
5. 개편되는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1부.
6. 신설되는 교과목 설명서(신설교과목에 한함) 1부.
7. 폐지되는 교과목의 대체 인정 교과목과 경과규정
8. 교양 및 전공 회의록
9. 개편에 필요한 법령 (해당 시)
10. 호서교육인증제 교육과정평가 인증서

[본조신설 2018. 3. 1]

제24조의5(교육과정 평가 및 강의개선) ① 교육과정개발, 편성, 운영의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수

자, 학부(과) 및 전공, 대학차원의 교육과정 평가체계를 둔다.(개정 2020. 3. 16., 2022. 8. 25.)

1. 교수자는 매 학기 수업계획서 입력 이후 강의자가진단을 입력해야 한다.

2. 교수자는 매 학기 수업종료 후 담당교과목의 강의개선계획서를 입력해야 한다.

3. 학부(과)·전공에서는 매학기 수업종료 후 강의개선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학부(과)·전공 차원의 교육과정 개선실적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교육과정 리뷰보드 보고서를 입력해야 하며, 리뷰보드 활동에는 강사 및 비전임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수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4. 교육과정 운영의 주무부서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연차별로 작성한다.

5.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호서교육인증제 인증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

제24조의6(교육과정 환류) ① 교양 및 전공에서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② 교육성과관리센터는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평가하여 환류함으로써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양 및 각 학부(과)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0. 3. 16.)

1. 산업계 및 사회 요구 분석, 내외 환경 분석, 학문 동향 분석, 교육 수요자 요구 조사, 졸업생 진로 분석 등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2.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3. 교수자는 강의평가 및 강의자가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개선 보고서(Review board)를 작성해야 한다.

4. 교과목 개편 시 교수자별 강의개선계획서를 분석하여 분석내용을 반영한다.

5. 교양 및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 시 교육과정 리뷰보드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반영한다.

6. 연속하여 4개 학기간 미개설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

제25조 (과목당 학점) 교과목은 2-3학점 단위로 편성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 또는 4학점 이상의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0. 6. 1, 2002. 2. 25)

제26조 (학수번호) 교과목의 학수번호를 부여하여 학적관리상의 혼란을 방지한다.

제27조 (교육과정표) ① 교육과정표는<표-교육1>과 같다. 다만, 공통트랙과 심화트랙을 포함한 교육과정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2011. 3. 1, 2012. 3. 1, 2013. 3. 1, 2014. 3. 1, 2015. 3. 1, 2016. 3. 1, 2017. 3. 1. 2018. 9. 4, 2019. 3. 1, 2020. 3. 1, 2020. 3. 16., 2020. 9. 1. 2021. 3. 1., 2022. 8. 25., 2023. 2. 6.)

②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그 명칭·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0. 6. 1, 개정 2012. 3. 1, 2013. 3. 1)

③ 학과(부)별 교육과정은 제1항의 교육과정표와 제24조 제5항의 편성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조 신설 2002. 2. 25, 개정 2012. 3. 1, 2013. 3. 1)

④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표-공학인증1>상의 심화프로그램 이수학점 총괄표에 따르며, 이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7. 2. 28, 개정 2009. 3. 1, 2010. 2. 22, 2013. 3. 1, 2014. 3. 1, 2015. 3. 1, 2017. 9. 1, 2020. 3. 1)

⑤ 전공교육과정표에 전공적응역량 교과목을 표기한다. (신설 2020. 3. 1)

제28조 (설강원칙) 동일 학수번호의 과목은 1개 반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설강 및 강의실 사정, 수강생 수 등을 참작하여 2개 반 이상으로 분반할 수 있다.(개정 2024. 3. 1)

제29조 <삭제 2013. 3. 1>

제29조의 2 <삭제 2018. 3. 1>

제30조 <삭제 2018. 3. 1>

제31조 <삭제 2018. 3. 1>

제32조 <삭제 2018. 3. 1>

제32조의 2 (인성교양과정)

① 인간 행동의 근간이 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교양과정을 <표-교양1>과 같이 개설한다. (개정 2019. 3. 1)

② <삭 제 2019. 3. 1>

③ 2019학번 이전 입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1학점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등급화 하지 아니하고, 2019학번 입학생부터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P학점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등급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1)

[조 신설 2017. 3. 1.]

제32조의 3 (기초교양과정)

① 지식과 학문탐구의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초교양과정을 <표-교양2>와 같이 개설한다. (개정 2019. 3. 1, 2019. 8. 26, 2020. 3. 16, 2024. 3. 1)

② <삭 제 2019. 3. 1>

제32조의 4 (일반교양과정)

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문을 인간과 예술,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융복합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 3. 1.)

② 일반교양과목은 <표-교양3>에 정한 교과목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1. 3. 1., 2022. 8. 25, 2024. 3. 1)

③ <삭 제 2019. 3. 1>

④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 이수학생은 지정된 공학인증교양교과목 4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

제32조의 5 <삭제 2020. 3. 1>

제32조의 6 (전공기초과정)

① 생명보건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은 전공기초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기초과목은 최대 4과목을 편성하며 공학교육인증제 등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3. 1]

제33조 (전공과목) ① 전공과목은 단일전공, 복수전공(1전공, 2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연계전공 및 인증영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트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학과는 단일전공과목을 공통트랙과목과 심화트랙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2. 25, 2017. 3. 1, 2024. 3. 1)

② 전공과목(단일전공 및 복수전공)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며 필수학점을 9학점 까지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및 국가자격증(면허) 취득과 관련된 학부·학과와 트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학과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1, 2013. 3. 1, 2014. 9. 1, 2017. 3. 1., 2022. 8. 25, 2024. 3. 1)

③ 단일전공의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필수학점을 포함하여 59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3. 12. 1, 2011. 3. 1, 2012. 3. 1, 2013. 3. 1)

④ 편입학생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3. 26, 2002. 2. 25, 2003. 12. 1)

⑤ 예체능대학의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필수학점을 포함하여 7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11. 3. 1, 2012. 3. 1, 2013. 3. 1)

⑥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는 부전공과정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1. 3. 26)

⑦ 타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소속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영역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0. 10. 2 개정 2024. 3. 1)

⑧ <삭제 2013. 3. 1>

⑨ <삭제 2014. 3. 1>

제33조의 2 (트랙교육과정)

① 트랙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공교육과정이며, 공통트랙교과목과 심화트랙교과목으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 광역학부로 통합모집하는 학부·전공은 전공교육과정을 트랙교육과정으로 편성해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트랙교육과정을 확정한다.

③ 학사 구조개혁 결과에 의해 확정된 광역학부의 트랙교육과정은 2년 간 신설·폐지·명칭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신설·폐지·명칭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사항의 처리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 트랙교육과정 내 공통트랙 및 심화트랙교과목은 <표-교육1>에서 정한 단일전공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야 하며, 예외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24. 3. 1)

1. 공통트랙교과목 : 단일전공 이수학점의 50% 이상
2. 심화트랙교과목 : 단일전공 이수학점의 40% 이상

⑤ 트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표-교육1>에 정한 소속 학부·학과의 공통트랙 이수 학점 이상으로 공통트랙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

⑥ 트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재학 중 하나 이상의 심화트랙을 선택·변경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심화트랙을 다중트랙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열로 입학한 학생 중 실기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트랙 선택·변경과 다중트랙 이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⑦ 트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트랙 이수 결정은 학생이 선택한 심화트랙과 관계없이 마지막 학기까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을 기준으로 단과대학별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학적 상 광역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인의 학년에 부합하는 트랙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트랙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트랙교육과정을 선택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1. 2016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의 학생 중 광역학부로 전환된 학부·학과·전공의 변경 전 소속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2. 2016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의 학생 중 광역학부로 전환된 학부·학과·전공의 변경 전 소속으로 전공을 변경한 학생
3. 기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무처장이 승인한 예외사항에 속한 학생 (조 신설 2017. 3. 1.)

⑨ 제3항을 제외한 트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17. 3. 1.)

제34조 (전공변경자의 이수) ① 전공을 변경한 자는 기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 3. 1)

② 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로 전공을 변경한 학생이 심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이수를 원할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전과생 수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제35조 (편입학생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① 편입학생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때는 필요한 학점을 모두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6)

②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이수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 2003. 3. 24)

③ 편입학생이 복수전공을 희망할 때에는 소속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에서 각각의 최소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5)

④ 편입학생(학사편입학생을 포함한다)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재학 중 이수학점 기준은 <표-교육6>과 같다. (개정 2001. 3. 26, 2013. 3. 1, 2014. 3. 1, 2014. 9. 1, 2016. 3. 1, 2017. 9. 1, 2019. 3. 1, 2020. 3. 1, 2020. 3. 16, 2020. 9. 1., 2022. 8. 25., 2023. 2. 6., 2023. 8. 28., 2024. 3. 1)

⑤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편입학 후의 성적만 기재하며, 전적교의 성적은 편입학 시 사정학점 합계만을 기록한다.

⑥ 졸업 시 총 평균평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산정한다.

⑦ 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에 편입한 학생이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이수를 원할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편입생 수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제36조(복학생의 이수) ① 복학하는 학생은 최초 입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6, 2013. 3. 1)

② 제1항의 경우 이수구분별로 초과하는 기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③ 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인증제 운영 개시 이전 학번 복학생 중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이수를 원할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전입복학생 수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5. 9. 1)

제36조의 2 (교육과정 예외사항의 처리) ① 학부·학과·전공 및 행정부서는 2017학년도에 시행되는 광역학부제와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의한 사유로 제24조 내지 제33조, 제34조 내지 제36조의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사팀에 예외사항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접수된 예외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 후 예외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교무처장은 제24조 내지 제33조, 제34조 내지 제36조의 예외사항을 처리하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7. 3. 1.)

제 6 장 수업시간표 편성(개정 2016. 3.1)

제37조 (수업시간표 편성)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확정하여 수강신청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

[제목 변경 2016. 3. 1]

제38조 (편성절차) ① 각 학과(부)는 학사팀의 지침에 따라 강의과목 및 담당교수 명단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

② 기초교양교육팀에서는 교양과목 및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과목과 강의실을 배정하여 학과(부)에 통보하고 학과(부)에서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수업시간표를 작성한 후 종합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정의 최대 개설 학점과 시수에 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2. 22, 2014. 3. 1, 2016. 3. 1, 2017. 3. 1., 2018. 3. 1.)

③ 교무처장은 종합된 수업시간표를 조정한 후 학사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3. 1., 2021. 3. 1.)

제39조 (수업시간표 변경)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3. 1) [제목변경 2016. 3. 1]

제40조 (강의실 배정) ① 강의실(실험・실습실)의 배정은 수용능력과 수강생수를 참작하여 배정한다.

② 배정된 강의실은 담당교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사유가 있을 시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합동강의 및 분반강의) ① 교양과목은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60명 이상은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18. 9. 4, 2023. 2. 6)

② 실험실습 및 전공과목의 수강생수가 50명 이상일 경우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20. 3. 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및 실험실의 학생 수용 여건의 사유로 분반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분반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 3. 1.)

제42조 (폐강) ①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교양과목은 20명 미만,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현장실습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6, 2010. 2. 22, 2017. 3. 1., 2023. 2. 6)

②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종료 직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제1항의 예외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 3. 1.)

제43조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① 전임교원의 강의일수는 주당 4일 이상으로 하며, 연속 3시간 이상의 강의는 분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의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전임교원은 사전에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한 예외사항 범위 내에서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③ 강의평가가 기준미달인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강의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

제44조 (교시별 강의시간) ① 교시별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2017. 9. 1)

1. 주간 강의 : 50분 강의, 10분 휴식
2. <삭제 2017. 9. 1>

② 전항의 강의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 1 절 등 록

제45조 (재학생 자격)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46조 (자격상실) ① 소정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 3. 1>

제47조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재・편입생을 포함한다)도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학기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의 수강신청 학점이 0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

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징수하며, P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 6. 1, 2002. 2. 25, 2003. 3. 24, 2004. 2. 24, 2007. 2. 28, 2015. 9. 1)

제48조 (휴학생의 등록금대체) ① 개강일로부터 45일 이내 일반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3. 3. 1)

② 개강일로부터 45일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학 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6, 2011. 3. 1, 2013. 3. 1)

1. 수업일수 45일 초과 1/2 이하 휴학자 : 등록금의 1/2 납부
2. 수업일수 1/2 초과자 : 등록금 전액 납부
3. <삭제 2013. 3. 1>

③ 등록을 마치고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자와 학기종료 전에 학기를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하는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조 개정 2003. 3. 24)

제49조 (수업료 등의 반환) 해당 학기 개시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의하여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각 1호에 준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 9. 1)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조 신설 2007. 2. 28)

제50조 (전공변경자 등록) 전공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납부 또는 환불한다. (신설 2000. 6. 1)

제51조 (조기졸업자 등록) 조기졸업자는 최종학기의 이수학점이 12학점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 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의 장애기준 및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4. 11. 26)

제 2 절 수 강 신 청

제53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정한 기일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 교과목은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교차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13. 3. 1)

제54조 (수강신청 제한) ①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면담 교과목과 인성교양 교과목 중 '대학생활설계와 비전 1, 2'를 제외하고 12학점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04. 11. 26, 2012. 3. 1, 2015. 9. 1, 2017. 3. 1, 2019. 3. 1, 2023. 8. 28.)

1.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9. 3. 1)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산학융합캠퍼스 소속 학부·학과·전공 재적생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으로 타 전공 이수를 위해 한 학기동안 산학융합캠퍼스 외 타 캠퍼스에 개설된 교과목만을 이수하는 학생은 21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학기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개정 2017.

3. 1, 2019. 3. 1)

4. 학군사관후보생이 이수하는 군사학 교과목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군사학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

② 최종학년에(졸업 전 마지막 2개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저학점은 각 학기당 9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9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23. 8. 28.)

1.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18학점 미만인 경우 최종학년에 학기당 9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하다. (신설 2023. 8. 28.)

2.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8. 28.)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④ 채플은 1,2학년(4개 학기)에 걸쳐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매학기 P학점을 받아야 한다. 다만, 편입학생은 <표-교육6>의 편입학생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이수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 9. 1.)

⑤ 제1항의 수강신청학점에는 특별시험, 학점인정제 및 인증영역으로 취득한 학점수를 포함한다. (신설 2002. 2. 25., 개정 2023. 2. 6, 2024. 3. 1)

⑥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하며, 이에 따른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2. 3. 1.)

제55조 (수강지도)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56조 (수강신청의 효력 및 처리)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과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 ① 강의 예정 교과목이 폐강되었거나 강의시간 변경, 기재착오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학기 초 지정된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에 담당교수 및 단과대학장의 지도와 승인을 얻은 후에 수강신청 정정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정정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수강과목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정해진 기간에 담당교수,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가능 최소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2. 28)

③ 철회한 과목은 수강신청에서 삭제된다. (개정 2007. 2. 28)

④ (삭제 2019. 8. 26)

제59조 (삭제 2019. 8. 26)

제60조 (재수강) ①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2019. 8. 26)

② 재수강는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 단,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과 및 전공에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6, 2016. 3. 1, 2019. 8. 26)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0 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6. 3. 1, 개정 2017. 9. 1, 2019. 3. 1, 2023. 8. 28.)

④ 재수강 직전에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과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개정 2017. 3. 1, 2019. 3. 1, 2019. 8. 26)

⑤ 교무처장은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재수강 제한 대상 교과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2019. 8. 26)

⑥ 재수강 과목 신청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학기당 4과목, 졸업시까지 1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F과목은 제외한다. (신설 2016. 3. 1, 개정 2017. 9. 1, 2019. 8. 26)

제61조 (우등제한 및 제재) ① 15학점에 미달하여 신청한 자는 우등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4. 3. 1, 2020 3. 1)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부(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수학습센터 또는 카리타스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6.)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수학습센터 또는 Caritas 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3. 1, 개정 2018. 3. 1)

④ <삭제 2020. 3. 16.>

제 8 장 수업 및 출・결석

제62조 (수업계획서 작성) ① 당해 학기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매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들의 수강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개정 2003. 3. 24, 2016. 3. 1, 2017. 3. 1, 2018. 3. 1., 2021. 3. 1.)

② 수업계획서는 학생이 교육목표, 강의방법, 성적 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조 개정 2002. 2. 25, 2017. 3. 1, 2018. 3. 1)

제62조의 2 (휴강,보강의 절차)

① 공·사적으로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일 휴·보강계획서를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3. 1.)

② 교수자의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강의는 결강으로 처리한다.

③ 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휴·보강계획서와 결강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

④ 휴강 및 결강시간에는 대치·대강을 할 수 있다.

⑤ 휴·보강 신청 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

⑥ 보강 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여 출결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3. 1.)

⑦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강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교원은 다음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

[본조신설 2018. 3. 1]

제62조의 3 (수업 및 휴·보강의 점검)

① 학기 중 단과대학 및 학사팀에서 수업기간 준수 및 휴강에 따른 보강실시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② 미준수 사례 적발 시 개설학과(부)로부터 사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업결손 및 보강 미이행 교원은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

제63조 (교외수업 등) ① 교육실습・실험・실습・관찰・견학 등 수업 상 필요에 의하여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2일 전까지 단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외 수업계획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2021. 3. 1.)

② 단과대 학장은 제1항의 교외수업으로 인하여 대상 학생의 다른 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수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보강 또는 과제 부과 등으로 대체하여 교과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00. 6. 1)

③ 원격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자율학습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 3. 1)

④ 원격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콘텐츠에 대한 수업운영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 3. 1)

제64조 (외부출강) ① 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또는 사전에 외부출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외부출강은 연구일을 이용하여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0. 6. 1)

제65조 (학생출석 점검) ①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3. 3. 24, 2018. 3. 1)

② 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이 본인의 출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전자출결시스템 웹페이지에 기록을 한다.(신설 2018. 3. 1)

③ 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강의담당교원이 출석을 확인한다. (신설 2018. 3. 1)

④ 2주 이상 출결관리를 미준수하는 교원은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제65조의2(장기결석자 관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 출결 상황을 상시 기록하며, 교무처는 3주 이상의 장기결석자에 대하여 학부(과)에 통보한다.

② 학부(과)장은 장기 결석자에 대하여 상담 및 출석을 상담하고 상담일지는 학사팀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8. 3. 1]

제66조 (출석부) ① 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한다. (개정 2000. 6. 1, 2017. 9. 1., 2021. 3. 1.)

② <삭제 2011. 3. 1>

제67조 (결석처리) ① 수업시간 2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개강이후에 수강 신청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복학생과 재입학생은 그 허가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 3. 26)

제68조 (유고결석) ① 다음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공결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2020. 9. 1, 2022. 3. 1, 2023. 8. 28.)

1.「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2.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교외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단, 교외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본인의 결혼 : 7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7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7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4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7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3일

6. 최종학기(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등록한 학생 중 4대 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창업 및 프리랜서 제외) (개정 2024. 3. 1)
7. 학생의 당일 진료 또는 입원(4주 이내의 입원 기간)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회합
9.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회합
10. 운동부 선수가 체육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11.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2. 기타 단과대학장 및 학부·학과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학과(부)장은 공결원을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해당교수 및 강사에게 제출토록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게 하고, 교수 및 강사는 출석 성적에 반영한다. (개정 2010. 2. 22)

제68조의1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① 소속 학부(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

제69조 (무단결석자 조치) ① 교무처장은 교양과목을, 단과대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무단결석자를 점검하고, 그 명단을 파악하여 출석 독려하며, 2주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② 학부모 및 본인에게 2회 이상 경고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제 9 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 1 절 시 험

제70조 (시험시기) ① 학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은 매학기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1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

② <삭제 2020. 3. 16.>

제71조 (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기실습 등의 과목은 작품 또는 연주, 실기 등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세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③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답시험이 어려운 경우는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다른 시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0. 11. 9.)

제72조 (시험시간 지각) 시험시간에 지각한 학생은 제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73조 <삭제 2013. 3. 1>

제74조 (시험감독) ① <삭제 2014. 3. 1>

② <삭제 2014. 3. 1>

③ 시험감독은 담당교수 및 강사가 감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험생이 많을 경우 분반하여 다른 교수 및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제75조 (부정행위 처벌) 시험기간 중 다음 행위자는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1차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목 성적을 F 처리하고, 2차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목 F 처리와 무기정학에 처하되 교내 게시

판에 처벌 내용을 공고한다.

1. 지정된 고사장과 시간을 어겼을 때
2.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서적, 노트, 기타 기록물을 보거나 보려고 하였을 때
3.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려고 하였을 때
4. 일단 기재하였던 학부, 학과(전공), 학년,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을 때
5. 다른 학생의 시험을 대신하였을 때
6.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감독 교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7. 고사장 안에서 받은 답안지를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감독 교수의 허가 없이 찢거나 훼손하였을 때
8.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

제76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기간 전에 그 사유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16.)

② 과목 담당교수는 아래의 증빙서류에 의해 추가시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3. 16.)

1. 신병 : 진단서(병원발행)
2. 입대 및 병무소집 : 소집영장 또는 입대 확인서 사본
3. 직계가족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4. 기타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77조 (성적제출 및 산출근거관련) ① <삭제 2002. 2. 25>

②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 후 소정기일 이내에 성적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 2024. 3. 1)

③ 담당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 출석부 등)를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 2013. 3. 1, 2017. 3. 1.)

④ 교무처장은 성적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

제78조 (성적산출) ① 학업성적의 산출은 출석, 시험 및 프로젝트 평가, 역량수행평가 등 과정평가 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 3. 1)

② 출석성적은 <표-성적1>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2016. 3. 1, 2017. 9. 1, 2024. 3. 1)

③ 평소 학업성적은 수업태도, 예습·복습상태 또는 과제물 처리로 한다.

제 2 절 성 적 평 가

제79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 6. 1, 2012. 3. 1, 2013. 3. 1, 2018. 9. 4, 2020. 3. 1., 2020. 11. 9, 2022. 3. 1, 2023. 8. 28.)

② 성적평가 적용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3. 3. 1, 2014. 3. 1, 2018. 3. 1, 2018. 9. 4, 2020. 3. 16., 2020. 11. 9, 2022. 3. 1, 2023. 8. 28.)

1. 교직 교과목, 실험실습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현장실습 교과목, 인성교양 교과목(기독교 및 벤처관련교과목 제외), 외부 강연자 세미나 교과목, 외부기관평가 교과목, 설계교과목, 학생참여형 교과목(PBL, FL, AL 등), 창의융합형 교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미만 교과목,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 기타 교과목은 절대평가 또는 PF평가를 할 수 있다.
2. 학점인정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채플 교과목, ROTC군사학 교과목, 면담 교과목은 PF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장애인과 외국인유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삭제 2023. 8. 28.>
5. <삭제 2023. 8. 28.>

6. <삭제 2023. 8. 28.>
7. <삭제 2023. 8. 28.>
③ 제2항 1~3호와 기타 교과목이 필요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제80조 (평균 성적산출) ① 평균성적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성적 P등급 과목은 평균 산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9. 1)

1. 당해 학기 평점평균성적 산출법 : $\frac{\Sigma(\text{단위학점}\times\text{취득평점})}{\text{총 수강 신청 학점 수}}$

2. 졸업 시 평점평균성적 산출법 : $\frac{\Sigma(\text{단위학점}\times\text{취득평점})}{\text{총 이수학점}}$

②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산출은 <표-성적2>와 같이 한다.(신설 2017. 9. 1)
백분위점수 : 60+((평균평점-1)×40/3.5)

제81조 (동점자 처리) 성적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0. 6. 1, 2017. 9. 1, 2023. 3. 1.)
1.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 : 당해학기 환산 총점이 많은 학생
2. 환산총점 같은 경우 : 당해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3. 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최하위 등급이 높은 학생
4. 최하위 등급이 같은 경우 : 누적 총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5. 누적 총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 누적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6. 위 1~5호가 같을 경우
   가. 1학년 : 교양과목 점수가 우수한 학생 (개정 2014. 3. 1, 2017. 3. 1, 2017. 9. 1)
   나. 2, 3, 4, 5학년 : 전공과목 점수가 우수한 학생 (개정 2007. 2. 28)

제82조 (군입대자의 성적인정) 병역의무로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2/3이상 출석과 교과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소정의 평가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 2024. 3. 1)

제83조 (학점포기 및 F 처리) ① <삭제 2014. 3. 1>
②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당해 학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③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84조 (이의신청) ①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열람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1)
② 이의신청 심사결과 전산처리 또는 대조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한 경우 성적정정을 할 수 있다.

제85조 (성적열람) 담당교수가 확정 성적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기간동안 성적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 3. 1)

제 10 장 이수의 인정

제 1 절 부 전 공

제86조(부전공의 범위) ① 모든 전공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미래융합대학과 국제학부의 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2. 8. 25, 2024. 3. 1)

② 각 전공별 부전공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전공 인원을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인원 및 선발방법 등은 해당 단과대학장의 요구로 총장이 정한다.

제87조 (부전공 이수)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인 자로 부전공 신청기간에 이수신청서를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

② <삭제 2014. 3. 1>

제88조 (이수학점) ① 부전공 이수학점은 각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학과에 개설된 트랙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도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통트랙교과목과 심화트랙교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3. 1, 2024. 3. 1)

② <삭제 2002. 2. 25>

③ 전공과 부전공과목은 9학점 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2. 8. 25.)

제89조 (수강지도)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부)장이 한다.

제90조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91조 (이수사정) ① 부전공의 이수사정은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전공을 이수한 전공에서 사정한 후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1)

②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 시 부전공을 기재한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③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조건은 충족하였으나,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학기말에 주전공(제1전공)의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23. 2. 6)

제92조 (학점의 대체 및 이수인정) ① 부전공 이수자가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그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분류한다.

② 총 취득학점 분석결과 제87조의 부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인의 부전공 취득인정 신청에 따라 해당 학부(과)운영회의의 이수 사정을 거쳐 부전공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6, 개정 2013. 3. 1, 2014. 3. 1)

제 2 절 복 수 전 공

제93조 (명칭 및 적용범위) ① 제1전공이란 입학 시 학부에 소속된 전공에서 2학년 내지 3학년 초 전공분류 및 선택에 따라 배정된 최초의 전공을 말한다.

② 복수전공이란 최초에 배정된 전공 외에 제2전공, 제3전공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복수전공을 지원하지 않는 자를 단일전공자라 한다.

④ 본 대학교 내 모든 학과(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건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부), 미래융합대학, 국제학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12. 3. 1, 2013. 3. 1, 2014. 3. 1., 2022. 8. 25, 2024. 3. 1)

⑤ 최소전공학점은 복수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최초로 배정된 전공)과 제2전공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제94조 (최소전공학점) ① 최소전공 학점은 1전공 47학점, 2전공 32학점 이상 38학점 이하로 하고 해당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단, 17학번 이후 최소전공 학점은 1전공 47학점 , 2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2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13. 3. 1, 2017. 9. 1)

② 학부별 최소전공학점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조 개정 2002. 2. 25, 2017. 9. 1)

③ 학부·학과에 개설된 트랙교육과정을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공통트랙교과목과 심화트랙교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항 신설 2017. 3. 1, 개정 2024. 3. 1)

제95조 (신청 및 이수시기)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이상인 자로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이수신청서를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24, 2014. 3. 1)

② 교무처장은 복수전공신청서에 의거 복수전공 지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복수전공 승인자 명단에 따라 복수전공자대장, 복수전공취소자대장 및 기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 졸업 시까지 보관하여 졸업사정자료로 제출한다.

④ (신설 2003. 3. 24) <삭제 2010. 2. 22>

⑤ <삭제 2004. 12. 6>

제96조 (복수전공 취소) ①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취소한 자는 단일전공자의 학점취득 기준에 따른다.

제97조 (복수전공자 취득학점) ① 입학당시와 동일한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하는 자는 해당 전공의 최소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5)

② 입학당시와 다른 학부에서 복수전공하는 자는 최소전공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기초(이공계기초) 또는 기초교양 과목이 있을 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 2002. 2. 25, 2014. 3. 1, 2017. 3. 1, 2022. 3. 1.)

③ 복수전공으로 이수가 요구된 교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15학점 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2. 8. 25.)

제98조 (학위수여) ①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제1전공 학사학위와 복수전공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다만, 트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 및 학과를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한 학생은 제94조 제3항의 공통트랙교과목과 심화트랙교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화트랙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 3. 1, 2024. 3. 1)

②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학기말에 주전공(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3. 2. 6.)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④ 복수전공 이수사정은 해당전공에서 실시한 후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1)

제99조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한 각각의 졸업종합시험을 합격하거나 졸업논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전공에 대한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은 해당 전공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전공의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6)

제100조 (실험·실습비) 실험실습을 요구하는 학과(부)의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비를 징수한다.

제101조 (학점의 대체 및 이수인정) ①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분류한다.

② 총 취득학점 분석결과 제99조의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인의 복수전공 취득인

정 신청에 따라 졸업사정회의를 거쳐 복수전공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6, 개정 2014. 3. 1, 2017. 3. 1)

제 3 절 연계전공·융합트랙 (개정 2020. 3. 1)

제102조 (연계전공·융합트랙) ① 연계전공·융합트랙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표-연계1> (개정 2014. 3. 1, 2015. 3. 1, 2020. 3. 1, 2022. 3. 1., 2022. 8. 25., 2023. 2. 6., 2023. 8. 28, 2024. 3. 1)

② 교육과정은 학부(학과)개설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필요시 전공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③ 연계전공 · 융합트랙의 소속과 교과운영의 주관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3. 1)

④ <삭제 2014. 3. 1>

⑤ <삭제 2014. 3. 1>

⑥ 연계전공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타학부 개설과목을 연계전공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 개정 2017. 3. 1, 2020. 3. 1)

⑦ 연계전공 · 융합트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교수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4. 3. 1, 개정 2020. 3. 1)

⑧ 연계전공, 융합트랙 및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3. 1. 개정 2022. 3. 1.)

⑨ 단일전공 이수자가 각 전공의 최저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초과 이수하는 것을 심화전공이라 한다. (신설 2018. 9. 4, 개정 2020. 3. 1)

⑩ 심화전공 이수신청자는 2학년 이상인 자로 소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9. 4)

⑪ 심화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9. 4)

제102조의 2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DSC 공유대학) 융합전공)

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선정에 따라 참여 대학간 공동으로 DSC공유대학 융합전공을 운영한다.

② DSC공유대학 융합전공은 복수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로 운영한다.

③ DSC공유대학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2. 3. 1.>

제102조의 5 <삭제 2022. 3. 1.>

제 4 절 특별시험 및 학점인정제 (절 명칭변경 2024. 3. 1)

제 1 관 특 별 시 험

제103조 (시험응시대상 및 시험과목) <삭제 2017. 3. 1>

제104조 (시험실시 시기 및 방법) <삭제 2017. 3. 1>

제105조 (시험성적 및 평점환산) <삭제 2017. 3. 1>

제106조 (학점인정 및 이수면제) <삭제 2017. 3. 1>

제107조 (특별시험위원회) <삭제 2017. 3. 1>

제 2 관 학점인정제 (관 신설 2000. 10. 30, 관 명칭변경 2024. 3. 1)

제108조 (학점인정제의 구분 및 인정기준) (개정 2022. 3. 1.)

① <삭제 2024. 3. 1>

② <삭제 2011. 3. 1>

③ <삭제 2011. 3. 1>

④ 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실적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을 이수한 실적을 전공 및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2, 개정 2022. 3. 1.)

⑥ 학점인정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개정 2002. 2. 25, 2024. 3. 1)

⑦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의 인정학점은 대학이 인정한 학점중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정한다.(신설 2015. 9. 1)

⑧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 3. 1.)

⑨ 미래융합대학 학습경험 등의 학점인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8. 25.)

제109조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1, 2016. 3. 1, 2017. 9. 1, 2022. 3. 1.)

1. 학점인정영역 및 기준 <표-인정1> (개정2013. 3. 1, 2014. 3. 1, 2014. 9. 1, 2015. 3. 1, 2017. 9. 1, 2019. 8. 26, 2020. 3. 1., 2020. 9. 1., 2021. 3. 1, 2022. 3. 1, 2023. 8. 28, 2024. 3. 1)
2. 방학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의 어학연수 이수증 소지자는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4주 이상 6주 미만일 경우 2학점, 6주 이상일 경우 4학점 인정한다. 단, 정부사업 및 각종 국제프로그램에 의한 연수일 경우 국제협력원장이 승인하고 교무처장의 허가에 의해 인정 한다. (추가 2003. 12. 1, 개정 2017.3.1.)
3. <삭제 2017. 9. 1>
4.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 방학 중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산업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8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1, 2014. 3. 1, 2022. 3. 1.)
5.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신설 2011. 5. 12, 개정 2012. 3. 1, 2014. 3. 1, 2022. 3. 1, 2023. 8. 28.)
   (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단관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근무한 실적을 바탕으로 15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 단, 현장실습 수행 중 학생보호의 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9. 8. 26.)
6.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3. 1.)
7. 직무체험 학점 인정은 최대 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17. 9. 1. 개정 2022. 3. 1, 2024. 3. 1)
8. 전공심화취업교육과정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전공심화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최대 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9. 1)
9. 창업대체학점은 창업실습과 창업학기제(예비창업학기, 초기창업학기)로 구분하며, 내규는 별도

로 지정한다.(신설 2021. 3. 1, 개정 2024. 3. 1)

10. 장·단기해외유학(교환학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매학기 6～18학점이며, 최대 3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되 평점화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24. 3. 1)

③ 학점인정은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단, 현장실습학기제, 창업학기제(예비창업학기, 초기창업학기), 선행학습경험, 장·단기해외유학(교환학생), 군사학교육(ROTC)에 관한 학점인정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2. 3. 1., 개정 2021. 3. 1, 2022. 3. 1., 2022. 8. 25, 2024. 3. 1)

④ 인정영역으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24. 3. 1)

⑤ 인정영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24. 3. 1)

⑥ 학생군사교육단에 소속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ROTC)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8학점까지 인정하며 인정범위 12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9. 8. 26, 개정 2024. 3. 1)

⑦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창업학기제(예비창업학기, 초기창업학기)는 재학중 1회만 인정한다. (신설 2021. 3. 1. 개정 2022. 3. 1, 2024. 3. 1)

제110조 (예비대학 교육과정) ① 수시모집으로 입학이 확정된 자는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예비대학 교육과정 학점은 최대 3학점꺼지 인정한다. (조 시설 2012. 3. 1. 개정 2022. 3. 1.)

1. <삭제 2022. 3. 1.>
2. <삭제 2022. 3. 1.>
3. <삭제 2022. 3. 1.>

② 예비대학 교육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또는 해당 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예비대학 교육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처리하고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등급화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1.)

④ 수강자에게는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예비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1조 (인증시험) <삭제 2017. 3. 1>

제112조 (군복무 중 학점인정) ①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조 신설 2012. 3. 1, 2019. 8. 26.)

② 군 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는 본 대학에서 지정한 수업만 가능하며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개정 2014. 9. 1, 2019. 8. 26.)

③ (삭제 2019. 8. 26.)

④ 특기병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은 정규학기에 학점을 인정하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9. 8. 26.)

⑤ 군 복무 중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 8. 26.)

제112조의2 (K-MOOC 학점인정제) ① 학생 중심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K-MOOC)를 통해 제공되는 강좌를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K-MOOC 강좌의 이수여부는 각 강좌별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이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③ K-MOOC 학점인정 교과목은 학기 중 최대 1개 과목만 신청 할 수 있다.

④ K-MOOC 강좌별 이수기준을 충족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일반선택 영역으로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⑤ K-MOOC 학점인정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

제 5 절 계 절 학 기

제113조 (개설) ① 계절학기는 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 (개정 2012. 3. 1)
② 계절학기의 개설은 학기개시 1개월 전에 개설교과목, 학점, 개강시간,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③ 수강신청자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다.

제114조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기졸업 대상자
2. 부전공, 복수전공 희망자
3. 교양과정 과목에서 성적불량자 (개정 2002. 2. 25)
4. <삭제 2007. 2. 28>
5. 기타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5조 (수강신청) ① 계절학기 개설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
② 계절학기 개설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이수단위) 매 학기당 수강시간은 이론의 경우 15시간, 실험·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제117조 (학점인정) ①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어,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하고, 성적평가의 기본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15. 3. 1)
② 실 수업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점을 인정한다.

제118조 (평점산출의 인정) ①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전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반영하며 장학생 선발대상 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26)
② 전항의 평점평균이 학사경고의 대상이 되더라도 학사경고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학 점 교 류

제119조 (학점인정) ① 국내외 대학과 본 대학 간의 학점교류 협약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 2012. 3. 1)
② 학점교류에 의하여 취득하는 학점의 인정범위는 정기학기와 계절학기로 취득하는 학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 중 총 2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환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1, 2014. 3. 1)
③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간의 협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2. 3. 1, 2013. 3. 1)
④ 정부나 국가기관 등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는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

제119조의 2 (사회봉사 교과목) 2019학번부터 입학한 학생은 '사회봉사의이해'와 '사회봉사의실천' 교과목을 이수 해야한다. 단, 미래융합대학과 국제학부 재학생은 제외한다.(조 신설 2019. 3. 1., 개정 2022. 8. 25, 2024. 3. 1)

제 7 절 사회봉사(절 명칭변경 2019. 3. 1)

제120조 (사회봉사활동 인정범위 및 기관) 교내·외의 공공기관 및 기타 사회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에서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범위는 <표-봉사1>과 같다. (개정 2012. 3. 1, 조 변경 2015. 9. 1, 개정 2015. 9. 1, 2016. 3. 1, 2018. 3. 1)

제121조 (활동 및 이수) ① 모든 학생은 재학 중 사회봉사 1학점(2019학번부터는 사회봉사의실천 P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미래융합대학과 국제학부 재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 3. 1, 2019. 3. 1., 2022. 8. 25, 2024. 3. 1)

② 2019학번부터 입학한 학생은 '사회봉사의실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P학점을 부여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항 신설 2019. 3. 1)

③ 2018학번까지 입학한 학생은 사회봉사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1학점을 부여하며, 졸업학점에 포함시킨다. 단, 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에는 포함시킨다. 단, 성적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한다. (개정 2000. 6. 1, 2002. 2. 25, 2003. 3. 24, 2011. 3. 1, 2012. 3. 1, 2016. 3. 1, 2019. 3. 1)

④ <삭제 2023. 2. 6.>

⑤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재학기간 중 실시한 봉사활동과 휴학기간 중 봉사활동에 대해서 포함하여 인정한다.(신설 2016. 3. 1, 개정 2017. 3. 1. 2019. 3. 1., 2021. 9. 1.)

⑥ 학과(전공)에서 주관하는 교내봉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사 계획을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봉사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1, 개정 2019. 3. 1., 2023. 2. 6.)

제122조 (활동계획서) ①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회봉사활동계획서'를 Caritas봉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26, 2016. 3. 1, 2019. 3. 1)

② 담당교수는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8. 26, 2016. 3. 1., 2023. 2. 6.)

③ 사회봉사 활동을 마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보고서와 사회봉사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봉사활동 인증서와 함께 Caritas봉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6, 2016. 3. 1, 2018. 3. 1., 2020. 9. 1.)

④ Caritas 봉사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 보고서와 봉사활동인증서를 근거로 하여 사회봉사활동 평가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3. 8. 26, 2016. 3. 1, 2018. 3. 1)

제123조 (평가 및 제출) ① Caritas 봉사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 평가표를 성적제출기간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2. 3. 1, 2013. 8. 26, 2016. 3. 1)

② Caritas 봉사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 평가표를 근거로 하여 성적평가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3. 8. 26, 2016. 3. 1)

제124조 (봉사센터운영위원회) ① 사회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Caritas 봉사센터에 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8. 26, 2016. 3. 1, 2018. 3. 1)

② 위원장은 Caritas 봉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Caritas 봉사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8. 26, 2016. 3. 1)

③ 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3. 1)

1.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계획 심의 및 결정
2. 사회봉사활동의 인정범위 결정 및 평가

[제목개정 2018. 3. 1]

제 8 절 교 직 과 정

제125조 (개설시기) 교직과목은 제2학년부터 제4학년까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6조 (이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02. 2. 25, 2013. 3. 1)

제127조 (신청 및 자격)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소정 기간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소정양식)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 신청자 중 인성, 적성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인원 안에서 선발한다.(개정 2003. 3. 24, 2009. 3. 1, 2011. 3. 1, 2013. 3. 1, 2016. 3. 1, 2018. 3. 1, 2019. 3. 1)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표-교직3>에 소속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2013. 3. 1, 2014. 3. 1, 2016. 3. 1, 2020. 3. 1)

③ <삭제 2011. 3. 1>

제128조 (이수학점) ① 교직이수자는 <표-교직1>의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5, 2004. 11. 26, 2007. 2. 28, 2009. 3. 1, 2014. 3. 1)

② 교직이수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기본이수영역과목 <표-교직2>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5, 2014. 3. 1, 2019. 3. 1))

1. 1999학년도까지의 입학생 : 9학점 이상
2.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2000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신규개설 전공 : 14학점 이상
3. 2009학년도 입학생 : 21학점 이상 (신설 2009. 3. 1)

③ 전공과목은 제2항 제3호의 기본이수영역 학점과 교과교육영역(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5, 개정 2009. 3. 1, 2013. 3. 1)

④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표-교직4>와 같다. (신설 2013. 3. 1, 개정 2014. 3. 1)

제129조 (성적 및 기타기준) ①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28조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2회 이상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09. 3. 1, 2013. 3. 1, 2017. 3. 1)

1.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2.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교직과목의 성적평가 구분 및 표시는 학칙 제44조 제1항에 의한다. (개정 2000. 6. 1)

제130조 (교육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① 교직과정 선택자는 교육실습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서 지정한 협력학교에서 4주간의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신청서와 실습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전기・전자・통신, 자원・환경, 화공・섬유, 건설, 기계・금속)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 26, 개정 2013. 3. 1)

제131조 (교직이수자의 타 교직 복수전공) ① 교직이수자는 타 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② 제1항의 경우 교직복수전공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하되, 당해 전공의 교직과정 승인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교직 복수전공 이수는 주 교직과정의 이수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④ <삭제 2009. 3. 1>

제 9 절 평생교육사자격과정 (절 신설 2003. 3. 24)

제132조 (평생교육사과정) ① 평생교육사 과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졸업 시에 평생교육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평생교육사 과정 교과목 <표-평생1> 21학점(필수 15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면 2급을 취득하며 교과목 성적은 반드시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3. 1, 2011. 3. 1, 2013. 3. 1)

③ 평생교육현장 실습은 제6학기 이후 현장실습 인정기관에서 수강 신청 후 학기 중 4주 이상 실시하며, 학점은 3학점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9. 3. 1, 2017. 3. 1.)

④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24)

제 10 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133조 (자격) ① 체육특기자란 특기자 전형 및 실기우수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팀의 선수를 원칙으로 하며, 팀이 없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명의로 1년에 2회 이상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말한다.

② 체육특기자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인정한다.

③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체육특기자 자격을 포기할 때에는 제적한다.

④ 체육특기자는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 26)

1. 정치・사회단체 및 서클활동의 가입
2. R.O.T.C 입단 및 재학 중 입영
3. 학생회 간부 활동
4. 졸업 시까지 타 대학 및 실업팀 이적
5. 졸업 시까지 선수등록 및 이탈

제134조 (출석) ① 체육특기자는 해당 학기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할 경우 출전기간은 공결로 처리한다.

③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합숙훈련 및 출전할 경우 그 기간은 공결로 처리한다.

④ <삭제 2012. 3. 1>

제135조 (시험) 체육특기자는 교과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소정의 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간 중 경기가 있을 때에는 추가시험에 응시하게 한다. (개정 2024. 3. 1)

제136조 (성적평가) ① 체육특기자의 성적은 특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시험성적과 출석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2. 3. 1)

② 특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교무처는 이에 해당하는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개정 2001. 12. 10)

A학점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출전한 자 단, 골프전공 실기우수자는 PGA・LPGA 자격증 취득자, Tour프로선수권대회 10위 이내 입상자

B학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단, 골프전공 실기우수자는 전국대회 1～10위 입상자, 세미프로 자격증 취득자, PGA・LPGA 및 Tour프로선수권대회 본선 진출자

C학점 : 도단위규모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자 단, 골프전공 실기우수자는 세미・2부・3부 투어 및 대학연맹 본선 진출자, PGA・세미프로 예선 1차 통과자

제137조 (기타) ① 실기우수자에 대하여는 체육특기자에게 적용하는 체육장학금(장학규정 제8조) 및 출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타사항이나 유권적 해석의 문제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해당 단과대 학장 및 전공교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1 절 석사학위과정의 연계이수

제138조 (수강 및 학점인정) ① 학칙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하며, 수강신청 시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1.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5학기(90학점)를 이수한 자
2.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② 수강신청 시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을 학사학위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한 학기에 1과목(3학점)으로 하고,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는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학점은 해당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석사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대학원장은 성적취득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는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으로 기재한다.

제139조 (학사과정 이수) ① 교무처장은 석사학위과정생이 학사과정 교과목으로 취득한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점인정 및 학적처리는 대학원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절 학·석사연계과정 (절 신설 2012.3.1)

제140조 (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칙 제52조의 4에 의거 학사과정 6학기(건축학과 8학기)이상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학사과정 5학기 이상 이수자부터 허용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 3. 1, 개정 2013. 3. 1, 2022. 3. 1., 2022. 8. 25, 2024. 3. 1)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편입생의 경우 학사과정 2개 학기(3학년1학기, 3학년2학기) 이수자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4. 3. 1)

③ 이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 · 석사 상호연계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 2024. 3. 1)

④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

⑤ 학・석사 연계과정에 대한 자격, 선발, 수강신청, 학점이수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2022. 3. 1, 2024. 3. 1)

제 11 장 졸 업

제 1 절 졸 업 요 건

제141조 (등록학기) ① 본교에 신입학 한 자는 8학기를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자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② 재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2학년 편입학자는 3년(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자는 2년(4학기) 이상, 4학년 편입학자는 1년(2

학기)이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 2020. 3. 1)

제142조 (취득학점) ① 취득학점은 교육과정에 의한 각각의 이수학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취득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1)

②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트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 및 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다중트랙을 이수하는 학생은 전공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트랙의 졸업논문과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 3. 1, 2024. 3. 1)

③ 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④ (삭제 2019. 8. 26)

⑤ 재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CanDo역량인증을 시행하며 개인별 교과 및 비교과의 활동을 측정하여 성취도를 인증할 수 있다. CanDo역량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 8. 26)

제143조 (졸업사정위원회) ① 졸업자 및 수료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별로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1)

② 위원회는 단과대학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조 신설 2000. 6. 1, 2011. 3. 1)

제144조 (졸업인정) 단과대학장은 총장에게 소정의 졸업사정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1. 3. 1)

제144조의 1 (학위) 학칙 제56조의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종류는 <표-학위>와 같다. (조 신설 2017. 3. 1., 개정 2018. 3. 1, 2018. 9. 4, 2019. 8. 26, 2020. 3. 16., 2021. 9. 1., 2022. 8. 25, 2024. 3. 1)

제 2 절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제 1 관 졸 업 논 문

제145조 (졸업논문 내용) ① 졸업논문은 논문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 제출이 부적당한 전공에 대하여는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실기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학부·학과·전공별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졸업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0. 6. 1. 개정 2017. 3. 1)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 80매 이내로 하며, 논문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제146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① 논문작성계획서는 7개 학기 째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 2007. 2. 28)

② 제출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서 학과(부)장에게 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8)

제147조 (지도교수 배정) 논문작성 계획서(실기발표계획서 포함)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00. 6. 1)

제148조 (논문원고 제출) 논문원고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종 졸업학기 종료 2개월 전에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구성한다.

②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

제150조 (최종논문 제출) (최종논문 결과표 제출) 최종 논문 심사 후 논문결과표를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제151조 (논문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

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자로 간주한다.

② <삭제 2007. 2. 28>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 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56조에 의한 졸업을 인정하되 그 시기는 논문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152조 (공고)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를 통하여 고지한다.

제 2 관 졸업종합시험 등

제153조 (졸업종합시험 과목) ① 졸업종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은 외국어와 전공과목으로 하되,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과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

② 영어는 전공영어로 출제하되 각 전공교수 주관 하에 실시한다.

제154조 (시험시간) 영어와 전공과목을 합하여 3시간 내외로 한다.

제155조 (시험자격) ①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2학년까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는 전공영어시험을 수험할 수 있다.(개정 2017. 9. 1)

② 전공과목 시험은 6개 학기를 이수한 자라야 한다.

제156조 (시험시기) ① 시험은 3학년 또는 4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 초에 학부, 학과(전공) 주관 하에 실시한다.(개정 2018. 9. 4)

② 시험일시, 시험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말에 공고한다.

③ <삭제 2017. 3. 1>

제157조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매 학기 졸업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제158조 (졸업종합시험위원회) <삭제 2017. 3. 1>

제158조의2 (졸업종합시험위원회) 졸업종합시험위원회는 각 학부, 학과(전공)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본조 신설 2018. 9. 4>

제159조 (시험의 평가) 시험은 각 전공별로 평가하며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과대학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 (실기발표) ① 실기발표는 졸업논문 수준과 동등한 정도이어야 하며, 공고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실기발표계획서는 7개 학기 째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

③ 실기발표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실기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실기 결과물을 최종 졸업학기 종료 2개월 전까지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부)에서는 실기발표 후 최종 실기 결과표를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기발표자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성적을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61조 (세부사항의 결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절 조 기 졸 업

제162조 (정의) 본 대학에 신입학(재・편입학자를 제외한다)한 자로서 학사과정에서 6학기 내지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제163조 (적용범위)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전 학부 및 전공으로 하며, 졸업정원 외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164조 (조기졸업 지망) ① 조기졸업을 지망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총 111학점(졸업요구학점 124인 학과(부): 113학점, 126인 학과(부): 115학점, 128인 학과(부): 117학점, 129인 학과(부): 118학점, 130인 학과(부): 121학점, 166인 학과(부): 153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업 성적의 총점평균이 4.3 이상이어야 한다.단, 미래융합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3. 3. 24, 2010. 2. 22, 2011. 3. 1, 2013. 3. 1, 2019. 3. 1, 2020. 3. 1., 2022. 8. 25.)

② 조기졸업신청서는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최종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접수한다. (신설 2000. 6. 1)

③ 모든 조기졸업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1, 개정 2014. 3. 1)

④ 학·석사연계과정지원자의 조기졸업기준은 해당규정을 충족하고 선발된 자로서 학사학위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조기졸업 신청서를 졸업하고자 하는 최종학기의 등록기간에 접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

⑤ <삭제 2022. 8. 25.>

제165조 (조기졸업대상 선정)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전공교수 및 학부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제166조 (조기졸업자 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미래융합대학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2. 30, 2016. 3. 1., 2022. 8. 25.)

1. 학칙 제92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
2. <삭제 2005. 12. 30>
3. 이수학기 중 한 학기라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4.0 미만인 학생(성적 취소 및 재수강에 의한 성적변경은 반영하지 않음.) (개정 2010. 2. 22)
4.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

제167조 (학점취득) 조기졸업자는 특별시험 및 계절학기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0. 6. 1)

제168조 (졸업사정)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매학기 말에 한다.

제 12 장 학적부 및 증명발급

제169조 (학적부의 기록・보관)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적, 성적 및 특기사항을 학적부에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③ 학적부는 영구 보관문서로 한다. (개정 2014. 3. 1)

제170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첨부하여 변경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

제171조 (학적관계 증명) ①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적관계 증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1)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삭제 2003. 3. 24>
3. 졸업증명서 : 본 대학을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취득학점 및 제반사항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자

5. 수료증명서 : 학칙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6. 성적증명서 (개정 2004. 3. 22, 2014. 3. 1)
7. 교직예정증명서 (신설 2001. 3. 26)
8. 휴학증명서 : 재적생으로 현재 휴학 중인 자 (신설 2003. 3. 24)
9. 제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서 자퇴자와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03. 3. 24)
10. 기타 학적에 관한 확인 증명서
11. 학적부 : 생활기록부 (신설 2007. 2. 28)

②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추천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 2. 28>
2. 학장추천서(진학, 취업, 장학 등) (개정 2007. 2. 28)
3. <삭제 2003. 3. 24>
4. 등록금 납입증명서
5. 장학 수혜 증명서
6. <삭제 2003. 3. 24>
7. 기타 추천 및 증명서

제172조 (발급) ① 등록금미납, 도서 미반납(졸업생에 한함) 등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증명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3. 1>

제173조 (수수료) 본 대학교 증명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문증명서 : 500원
2. 영문증명서 : 1,000원

제 13 장 시간제 등록생 (장 변경 2009. 3. 1)

제174조 (등록지원 자격) 본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75조 (등록지원 절차) ① 시간제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고교 졸업증명서
3.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4.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표 원본 및 사본(해당자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6조 (등록금)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7조 (선발 취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6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 3. 1)

2. 입학지원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3. 전염병, 유전성질환 등으로 타인 또는 본인의 수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제178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독자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별도반을 구성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179조 (수강신청 및 정정) ①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

② 수강신청 정정은 학부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0조 (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56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졸업이수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자 (개정 2009. 3. 1)
3. 타전공 학위취득자로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자 (신설 2011. 3. 1)

② 학사학위수여신청서는 해당 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3. 1.)

제181조 (학적변동) ① 학기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료, 재적, 재입학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학생활동 금지) 시간제등록 학생은 일반학생의 자치활동에의 가입,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0. 6. 1)

제183조 (제증명 발급) 시간제등록 학생에게는 다음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등록증명서
2. 도서관 열람증
3. 성적증명서

제 14 장 공개강좌 등

제184조 (공개강좌의 수강허가 및 취소) ① 공개강좌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또는 방학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5조 (외국인의 과목이수) 외국인의 과목이수자가 그 과목의 수업시간을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기타 사정에 급제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6조 (위탁생의 제명)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 15 장 보 칙 (장 신설 2000. 6. 1, 장 변경 2004. 12. 6)

제187조 (규칙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부 칙 (200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항의 <표-교육6>의 개정사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무규정
2. 부전공과정 시행규칙
3. 복수전공에 관한 시행규칙
4. 교직과정 시행규칙
5.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시행규칙
6. 조기졸업제 시행규칙
7. 특별시험제 시행규칙
8. 학부제에 따른 전공 선택·배정에 관한 시행규칙
9. 시간제학생등록제 시행규칙
10.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 규정
11. 교육과정 규정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시행중인 모든 학사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0. 2)

1. (시행) 이 규칙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30)

1. (시행) 이 규칙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7)

1. (시행) 이 규칙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8)

1. (시행) 이 규칙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6)

1. (시행) 이 규칙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55조 제1항의 단서조항·제2항·제5항 및 제118조, 제127조의 2 제4항의 규정은 2002학번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34조의 4의 규정은 2002학년도 수시모집 입학확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32조, 제34조 ③항의 규정은 2004학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업연한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9조의 규정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4조(학점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09조 2의 3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균형교양과목 영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할 경우에는 기존의 영역으로 인정한다.
제3조(컴퓨터공학전공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의무이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97조 ⑤항의 규정은 해당 학번 모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며, 그 사유를 해제한다.

부 칙 (2006.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영역으로 인정한다.
②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은 2006학번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기졸업자 지망에 대한 경과조치) 2006학번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강과목 철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59조 2의 규정은 2005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의 경과조치)제24조 제8항, 제27조 제4항의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 3. 1)

부 칙 (2009.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의 경과조치) 제24조 제8항, 제27조 제4항,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7항, 제36조 제3항, 제142조 제3항의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 3. 1)

부 칙 (2010.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78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제1항 제3호 규칙은 2010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개정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신청)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제17조 (학과 및 전공의 변경 신청) 제5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표-교육1>의 전공과목 제한 폐지는 2012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공과목) 제33조 제9항의 규칙은 2012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이수 대한 경과규정) 제60조 (재이수) 제1항의 규칙은 2013학번부터 적용한다.
제6조(성적평가 분포비율에 대한 경과규정)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제79조 (성적평가 분포비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학점인정 대한 경과규정)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제109조 (학점인증) 제1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① 2013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균형교양과목을 재이수 할 경우 현재의 영역으로 인정한다.
② 제88조(이수학점), 제94조(최소전공학점)에서 전공필수 학점은 2013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졸업지망에 대한 경과조치) 2014학번부터 적용한다. 학·석사연계과정에 의한 조기졸업은 2014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하며, 특성화고교졸재직자특별전형입학자에 대한 조기졸업은 2013학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개정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이전의 영역은 2015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부 칙 (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 (재이수) 제4항은 2016학번부터 적용하며, 2015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의 학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79조는 2018학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표-교육1>, 제144조의 1의 <표-학위>는 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3.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4조 수강신청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2018학번 이전 편(재)입학한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27조 1항의 규정은 2018학번 이전 신/편/재입학 학생은 <표-교육1>의 교육과정표에 따르며, 2019학번 이후 신/편/재입학한 학생은 <표-교육1-1>의 교육과정표에 따른다.

② 제32조의2 1항, 제32조의3 1항의 규정은 2019학번부터 적용하며, 편(재)입학한 학생은 편(재)입학 당시의 학년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5조 4항의 규정은 2019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19조의2 사회봉사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2019학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142조 졸업요건 졸업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2019학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164조 조기졸업 지망에 대한 경과조치) 2019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제144조의 1(학위) 규정은 2019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표-교육1-1>은 2019학번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표-교육6 편입학생 전적학교학점인정 및 이수기준[별첨]
표-교양1 인성교양 [별첨]
표-교양2 기초교양 [별첨]
표-교양3 일반교양 [별첨]
표-기초1 이공계기초 교육과정표 [별첨]

부 칙(2020. 3.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 용어 정의에 따른 경과조치) 제108조 및 제109조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8. 2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학년도 1학기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표-교육1-1> 2019학번 교육과정표는 <표-교육1>로 이동하고, 기존 <표-교육1-1>은 삭제한다.
② 반도체공학 연계전공, 친환경모빌리티 연계전공, 글로벌 K Culture 마이크로디리, 스마트투어리즘 마이크로디그리, 에듀테크 TESOL 마이크로드그리 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연계1>의 데이터소프트웨어융합트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동계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연계1>의 ESG교양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패키지 연계전공 신설 및 친환경모빌리티 연계전공 개편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표-교육1>(개정 2017. 9. 1, 2018. 9. 4, 2020. 3. 1, 2020. 3. 16, 2020. 9. 1, 2021. 3. 1, 2022. 3. 1., 2022. 8. 25., 2023. 2. 6., 2023. 3. 1.)

교 육 과 정 표(2023학번)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인문사회대학	기 독 교 학 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한국언어문화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영어영문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중국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법경찰행정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산업심리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노인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청소년문화 · 상담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유아교육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항공서비스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학부 경영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세무회계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디지털기술경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생명보건대학	식품공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제약공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화장품생명공학부 화장품과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생명공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식품영양학과	7	8	8	16	–	59		47	32	28	126+P
	물리치료학과	7	10	5	16	3	68		–	–	17	126+P
	임상병리학과	7	10	8	16	–	68		–	–	17	126+P
	간호학과	7	10	2	12	–	76		–	–	23	130+P
	동물보건복지학과	7	10	8	16	–	68		47	32	17	126+P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시스템제어공학과	7	8	8	18	6	59		47	32	22	128+P
	안전보건학과	7	8	8	18	3	59		47	32	25	128+P
	소방방재학과	7	8	8	18	3	59		47	32	25	128+P
	화학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트랙♠	7	8	8	18	24	20	39	47	32	4	128+P
	토목공학트랙	7	8	8	18	12	20	39	47	32	16	128+P
	환경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학과(5년제)	7	8	2	19	–	130		–	–	–	166+P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트랙♠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자동차공학트랙♠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해양IT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전자재료공학과	7	8	8	18	12	59		47	32	16	128+P
	신소재공학과	7	10	8	16	9	59		47	32	19	128+P
	자동차ICT공학과	7	10	8	16	6	59		47	32	22	128+P
AI	로봇공학과	7	8	8	18	6	69		47	32	16	132+P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융합대학	**빅데이터AI학부** 빅데이터분석트랙	7	8	8	16	–	36	33	47	32	24	132+P
	AI응용비즈니스트랙	7	8	8	16	–	36	33	47	32	24	132+P
	컴퓨터공학부 사물인터넷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인공지능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정보보호학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게임소프웨어학과	7	12	2	18	–	69		47	32	24	132+P
	전자공학과	7	8	8	16	12	59		47	32	18	128+P
	반도체공학과	7	8	8	18	6	59		47	32	22	128+P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골프산업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시각디자인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산업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실내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애니메이션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문화영상학부 영상미디어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문화콘텐츠기획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7	14	2	19	–	12	59	–		11	124+P
	연극트랙	7	14	2	19	–	71		–		11	124+P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기계ICT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사회복지상담학과	30				–	60		47	32	30	120

(♠) 공학인증참여학과(6)

교 육 과 정 표(2022학번)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인문사회대학	기 독 교 학 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한국언어문화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영어영문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중국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법경찰행정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산업심리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노인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청소년문화 · 상담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유아교육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항공서비스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학부 경영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세무회계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디지털기술경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생명보건대학	식품공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제약공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화장품생명공학부 화장품과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생명공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식품영양학과	7	8	8	16	–	59		47	32	28	126+P
	물리치료학과	7	10	5	16	3	68		–	–	17	126+P
	임상병리학과	7	10	8	16	–	68		–	–	17	126+P
	간호학과	7	10	2	12	–	76		–	–	23	130+P
	동물보건복지학과	7	10	8	16	–	68		47	32	17	126+P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시스템제어공학과	7	8	8	18	6	59		47	32	22	128+P
	안전소방학부 안전보건학트랙	7	8	8	18	3	30	29	47	32	25	128+P
	소방방재학트랙	7	8	8	18	3	30	29	47	32	25	128+P
	화학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트랙♠	7	8	8	18	24	20	39	47	32	4	128+P
	토목공학트랙	7	8	8	18	12	20	39	47	32	16	128+P
	환경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학과(5년제)	7	8	2	19	–	130		–	–	–	166+P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트랙♠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자동차공학트랙♠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해양IT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전자재료공학과	7	8	8	18	12	59		47	32	16	128+P
	신소재공학과	7	10	8	16	9	59		47	32	19	128+P
	자동차ICT공학과	7	10	8	16	6	59		47	32	22	128+P
AI융합대학	로봇공학과	7	8	8	18	6	69		47	32	16	132+P
	빅데이터AI학과	7	8	8	16	–	69		47	32	24	132+P
	컴퓨터공학부 사물인터넷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인공지능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정보보호학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게임소프웨어학과	7	12	2	18	–	69		47	32	24	132+P
	전자융합공학부 전자공학트랙	7	8	8	18	20	29	30	47	32	8	128+P
	디스플레이공학트랙	7	8	8	18	20	29	30	47	32	8	128+P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골프산업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시각디자인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산업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실내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애니메이션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문화영상학부 영상미디어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문화콘텐츠기획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7	14	2	19	–	12	59	–		11	124+P
	연극트랙	7	14	2	19	–	71		–		11	124+P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기계ICT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사회복지상담학과	30				–	60		47	32	30	120

(♠) 공학인증참여학과(6)

교 육 과 정 표(2021학번)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인문사회대학	기 독 교 학 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한국언어문화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영어영문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중국지역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법경찰행정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산업심리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노인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청소년문화 · 상담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유아교육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항공서비스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학부 경영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세무회계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디지털기술경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생명보건대학	건강기능식품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제약공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화장품생명공학부 화장품과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생명공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식품영양학과	7	8	8	16	–	59		47	32	28	126+P
	물리치료학과	7	10	5	16	3	68		–	–	17	126+P
	임상병리학과	7	10	8	16	–	68		–	–	17	126+P
	간호학과	7	10	2	12	–	76		–	–	23	130+P
	동물보건복지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시스템제어공학과	7	8	8	18	6	59		47	32	22	128+P
	안전소방학부 안전보건학트랙	7	8	8	18	3	30	29	47	32	25	128+P
	소방방재학트랙	7	8	8	18	3	30	29	47	32	25	128+P
	화학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트랙♠	7	8	8	18	24	20	39	47	32	4	128+P
	토목공학트랙	7	8	8	18	12	20	39	47	32	16	128+P
	환경공학과♠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학과(5년제)	7	8	2	19	–	130		–	–	–	166+P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트랙♠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자동차공학트랙♠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해양IT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전자재료공학과	7	8	8	18	12	59		47	32	16	128+P
	신소재공학과	7	10	8	16	9	59		47	32	19	128+P
	자동차ICT공학과	7	10	8	16	6	59		47	32	22	128+P
AI융합대학	로봇자동화공학과	7	8	8	18	6	59		47	32	22	128+P
	빅데이터AI학과	7	8	8	16	–	59		47	32	24	122+P
	컴퓨터공학부 사물인터넷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인공지능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정보보호학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게임소프웨어학과	7	12	2	18	–	59		47	32	30	128+P
	전자및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공학트랙	7	8	8	18	20	29	30	47	32	8	128+P
	디스플레이공학트랙	7	8	8	18	20	29	30	47	32	8	128+P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골프산업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시각디자인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산업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실내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애니메이션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문화영상학부 영상미디어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문화콘텐츠기획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7	14	2	19	–	12	59	–		11	124+P
	피아노트랙	7	14	2	19	–	12	59	–		11	124+P
	연극트랙	7	14	2	19	–	71		–		11	124+P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기계ICT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사회복지상담학과	30				–	60		47	32	30	120

(♠) 공학인증참여학과(6)

교 육 과 정 표(2020학번)

단과대학	계열 \ 이수구분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인문사회대학	기독교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한국언어문화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영어영문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중국지역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법경찰행정학과	7	12	2	18	–	59		47	32	24	122+P
	산업심리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노인복지학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24	122+P
	청소년문화·상담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유아교육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항공서비스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경영학부 경영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세무회계학트랙	7	10	2	18	–	30	29	47	32	26	122+P
	디지털기술경영학과	7	10	2	18	–	59		47	32	26	122+P
생명보건대학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트랙	7	10	8	16	–	30	29	47	32	26	126+P
	제약공학트랙	7	10	8	16	–	30	29	47	32	26	126+P
	화장품생명공학부 화장품과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생명공학트랙	7	10	8	16	3	30	29	47	32	23	126+P
	식품영양학과	7	8	8	16	–	59		47	32	28	126+P
	물리치료학과	7	10	5	16	3	68		–	–	17	126+P
	임상병리학과	7	10	8	16	–	68		–	–	17	126+P
	간호학과	7	10	2	12	–	76		–	–	23	130+P
	간호학과(계약)	–	–	–	4	–	20		–	–	8	32
	동물보건복지학과	7	10	8	16	–	59		47	32	26	126+P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7	8	8	18	24	59		47	32	4	128+P
	시스템제어공학과	7	8	8	18	6	59		47	32	22	128+P
	안전소방학부 안전보건학트랙	7	8	8	18	3	30	29	47	32	25	128+P
	소방방재학트랙	7	8	8	18	3	30	29	47	32	25	128+P
	화학공학과 ♠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트랙 ♠	7	8	8	18	24	20	39	47	32	4	128+P
	토목공학트랙	7	8	8	18	12	20	39	47	32	16	128+P
	환경공학과 ♠	7	8	8	18	24	59		47	32	4	128+P
	건축학과(5년제)	7	8	2	19	–	130		–	–	–	166+P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트랙 ♠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자동차공학트랙 ♠	7	8	8	18	24	30	29	47	32	4	128+P
	전자재료공학과	7	8	8	18	12	59		47	32	16	128+P
	로봇자동화공학과	7	8	8	18	6	59		47	32	22	128+P
	신소재공학과	7	10	8	16	9	59		47	32	19	128+P
	자동차ICT공학과	7	10	8	16	6	59		47	32	22	128+P
AI융합대학	**빅데이터경영공학부** 빅데이터통계트랙	7	8	8	16	–	30	29	47	32	24	122+P
	산업경영공학트랙	7	8	8	16	–	30	29	47	32	24	122+P
	컴퓨터정보공학부 사물인터넷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인공지능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정보보호학트랙	7	12	2	18	–	36	33	47	32	24	132+P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부 게임미디어SW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30	128+P
	게임애니메이션벤처융합트랙	7	12	2	18	–	30	29	47	32	30	128+P
	애니메이션트랙	7	12	2	19	–	12	59	–		13	124+P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공학트랙	7	8	8	18	20	29	30	47	32	8	128+P
	디스플레이공학트랙♠	7	8	8	18	20	29	30	47	32	8	128+P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해양IT공학트랙	7	8	8	18	–	30	29	47	32	28	128+P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골프산업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시각디자인학과	7	10	2	19	–	71		–		15	124+P
	산업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실내디자인학과	7	12	2	19	–	71		–		13	124+P
	문화영상학부 영상미디어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문화콘텐츠기획트랙	7	12	2	19	–	25	46	–		13	124+P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7	14	2	19	–	12	59	–		11	124+P
	클래식피아노트랙	7	14	2	19	–	12	59	–		11	124+P
	연극트랙	7	14	2	19	–	71		–		11	124+P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기계ICT공학과	30				–	60		47	32	30	120
	사회복지상담학과	30				–	60		47	32	30	120
	(♠)공학인증참여학과(7)											

교 육 과 정 표(2019학번)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함'영역	기초교양 '앎'영역		일반교양 '삶'영역	이공계기초(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인문융합대학	기독교학과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어문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영어영문학전공	7+P	14	0	18	0	59		47	32	24	122+P
	중어중국학전공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사회과학대학	**법경찰행정학부** 법경찰학트랙	7+P	14	0	18	0	30	29	47	32	24	122+P
	행정학트랙	7+P	14	0	18	0	30	29	47	32	24	122+P
	글로벌통상학과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경영학부 경영학트랙	7+P	12	0	18	0	30	29	47	32	26	122+P
	세무회계학트랙	7+P	12	0	18	0	30	29	47	32	26	122+P
	디지털기술경영전공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산업심리학과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항공서비스학과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트랙	7+P	14	0	18	0	30	29	47	32	24	122+P
	노인복지학트랙	7+P	14	0	18	0	30	29	47	32	24	122+P
	청소년문화·상담학과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유아교육과	7+P	12	0	18	0	59		47	32	26	122+P
생명보건대학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트랙	7+P	12	6	16	0	30	29	47	32	26	126+P
	제약공학트랙	7+P	12	6	16	0	30	29	47	32	26	126+P
	화장품생명공학부 화장품과학트랙	7+P	12	6	16	3	30	29	47	32	23	126+P
	생명공학트랙	7+P	12	6	16	3	30	29	47	32	23	126+P
	식품영양학과	7+P	10	6	16	0	59		47	32	28	126+P
	간호학과 ★	7+P	12	0	12	0	68		–		27	130+P
	물리치료학과	7+P	12	3	16	3	68		–		17	126+P
	임상병리학과	7+P	12	6	16	0	68		–		17	126+P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	7+P	8	6	18	24	59		47	32	6	128+P
	디지털제어공학전공	7+P	8	6	18	6	59		47	32	24	128+P
	안전소방학부 안전보건학트랙	7+P	10	6	18	3	30	29	47	32	25	128+P
	소방방재학트랙	7+P	10	6	18	3	30	29	47	32	25	128+P
	화학공학부 화학공학트랙 ♠	7+P	10	6	18	24	59		47	32	4	128+P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트랙	7+P	8	6	18	0	30	29	47	32	30	128+P

단과대학	이수구분 /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선택영역	졸업학점
		인성교양 '함'영역	기초교양 '앎'영역		일반교양 '삶'영역	이공계 기초 (MSC)	전공		복수전공			
			기초역량	대학기초			공통트랙	심화트랙	1전공	2전공		
공과대학	해양ＩＴ공학트랙	7+P	8	6	18	0	30	29	47	32	30	128+P
	건축환경토목공학부 건축공학트랙♠	7+P	10	6	18	24	20	39	47	32	4	128+P
	토목공학트랙	7+P	10	6	18	12	20	39	47	32	16	128+P
	환경공학트랙♠	7+P	10	6	18	24	20	39	47	32	4	128+P
	건축학전공(5년제)☆	7+P	10	0	19	0	130		–		0	166+P
	기계공학부 기계공학트랙♠	7+P	10	6	18	24	30	29	47	32	4	128+P
	자동차공학트랙♠	7+P	10	6	18	24	30	29	47	32	4	128+P
	지능시스템공학트랙	7+P	10	6	18	21	30	29	47	32	7	128+P
	로봇자동화공학과	7+P	10	6	18	6	59		47	32	22	128+P
	신소재공학과	7+P	12	6	16	12	59		47	32	16	128+P
	자동차ＩＣＴ공학과	7+P	12	6	16	6	59		47	32	22	128+P
과학기술융합대학	**빅데이터경영공학부** 빅데이터통계트랙	7+P	10	6	16	0	30	29	47	32	24	122+P
	산업경영공학트랙	7+P	10	6	16	0	30	29	47	32	24	122+P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트랙	7+P	8	6	18	0	30	29	47	32	30	128+P
	게임콘텐츠트랙	7+P	8	6	18	0	30	29	47	32	30	128+P
	정보보호학트랙♠	7+P	8	6	18	12	30	30	47	32	17	128+P
	컴퓨터소프트웨어트랙	7+P	8	6	18	0	30	29	47	32	30	128+P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공학트랙♠	7+P	8	6	18	24	29	30	47	32	6	128+P
	디스플레이공학트랙♠	7+P	8	6	18	24	29	30	47	32	6	128+P
	전자재료공학전공	7+P	8	6	18	6	59		47	32	24	128+P
	조형융합학부 실내디자인전공	7+P	14	0	19	0	71				13	124+P
	첨단미디어전공 애니메이션트랙	7+P	14	0	19	0	12	59	–		13	124+P
	미디어기획트랙	7+P	14	0	19	0	12	59	–		13	124+P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트랙	7+P	12	0	19	0	36	35	–		15	124+P
	골프스포츠산업트랙	7+P	14	0	19	0	36	35	–		13	124+P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7+P	12	0	19	0	71				15	124+P
	산업디자인전공	7+P	14	0	19	0	71				13	124+P
	문화예술학부 영상미디어트랙	7+P	14	0	19	0	12	59	–		13	124+P
	문화기획트랙	7+P	14	0	19	0	12	59	–		13	124+P
	문화콘텐츠트랙	7+P	14	0	19	0	12	59	–		13	124+P
	실용음악공연예술트랙	7+P	14	0	19	0	12	59	–		13	124+P
	연극트랙	7+P	14	0	19	0	71				13	124+P

<표-교육1-1> <삭제 2023. 2. 6>
<표-교육2> <삭제 2013. 3. 1>
<표-교육3> <삭제 2018. 3. 1>
<표-교육4> <삭제 2018. 3. 1>
<표-교육5> <삭제 2018. 3. 1>

<표-교육6>(개정 2017. 9. 1, 2019. 3. 1, 2020. 3. 1, 2020. 3. 16., 2020. 9. 1., 2022. 8. 25., 2023. 2. 6., 2023. 8. 28, 2024. 3. 1)

편입학생 전적학교학점인정 및 이수 기준

1. 편입학생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이수기준

편입 구분	편입 학기	전적학교 학점인정	이 수 기 준 (단위 : 학점)							광역학부 심화트랙 이수학점
			인성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과목	일반 선택	사회 봉사	채플	계	
일반학과 (2학년)	1학기	34학점	3	10	54(60)	33(26)	2P	3P	100학점+5P	(유형 ①) 29 (유형 ②) 38 (유형 ③) 43
일반학과 (3학년)	1학기	68학점	3	6	38(50)	19(7)	2P	2P	66학점+4P	(유형 ①) 24 (유형 ②) 27 (유형 ③) 36
건축학과 (3학년)	1학기	68학점	3	6	87	6	2P	2P	102학점+4P	
일반학과 (4학년)	1학기	102학점 (98)	-	4	20(23)	8(5)	-	1P	32학점+1P	
계약학과 (4학년)	1학기	102학점	-	4	20	8	-	-	32학점	
미래융합대학 (3학년)	1학기	60학점	-	6	36	18	-	-	60학점	
국제학부 (3학년)	1학기	60학점	-	6	36	18	-	-	60학점	(유형 ①) 24

※ 최소전공과목 및 전공인정 범위의 ( ) 숫자는 예체능대학 전공에 적용되는 학점이다.
※ 건축학과 편입학생의 경우 건축학 교육 인증원의 인증 최소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적학교의 학점인정은 건축학 인증원이 인증하는 과목에 한해 최대 68학점 이내로 인정되며 부족한 학점은 추가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 '사회봉사'는 사회봉사의이해, 사회봉사의실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2019학번부터 적용)
※ 미래융합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광역학부 심화트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심화트랙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4학년은 선호하는 트랙의 출원 전공교과목으로 이수기준을 충족해야하며, 2~3학년의 이수기준은 상기표에 따른다.
(※ 출원 전공교과목은 학과사무실을 통해 확인)

〈편입생 광역학부 심화트랙 유형별 구분〉

유형	단과대학	유형별 트랙 현황	심화트랙 이수학점	
			2학년	3학년
①	인문사회대학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트랙, 노인복지학트랙)	29	24
	경 영 대 학	**경영학부**(경영학트랙, 세무회계학트랙)		
	생명보건대학	**화장품생명공학부**(화장품과학트랙, 생명공학트랙)		
	공 과 대 학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공학트랙, 자동차공학트랙) **안전소방학부**(안전보건학트랙, 소방방재학트랙) **정보통신공학부**(정보통신공학트랙, 해양IT공학트랙)		
	AI융합대학	**빅데이터AI학부**(빅데이터분석트랙, AI응용비즈니스트랙) **컴퓨터공학부**(사물인터넷트랙, 인공지능트랙, 정보보호학트랙) **전자융합공학부**(전자공학트랙, 디스플레이공학트랙)		
②	공 과 대 학	**건축토목공학부**(건축공학트랙, 토목공학트랙)	38	27
③	예체능대학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트랙, 연극트랙, 클래식피아노트랙) **문화영상학부**(영상미디어트랙, 문화콘텐츠기획트랙)	43	36

※ 국제학부 편입생의 심화트랙 이수학점은 ①유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적용

1)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동일교과목의 학점대체를 불허한다.

2) 2001학년도부터 동일계 비동일계의 구분을 없앤다.
3) 편입학 시 지도교수는 면담을 통하여 학점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이미 편입하여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 중 이수기준은 종전의 기준과 개정기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5) 전적학교 학칙에 따라 해당 학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였으나, 본 대학의 전적학교 인정학점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전적학교에서 수료한 학점만 인정하며, 우리대학교 학칙 제51조(졸업 및 수료학점)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은 전공인정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추가 취득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의 전적학교 인정학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본 대학교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다.(신설 2001. 3. 26, 개정 2017. 3. 1, 2017. 9. 1)

3. 유의사항
1) 인간과기독교(또는 세계와기독교)를 제외한 인성교양 및 기초교양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2) 일반교양은 3개 영역별로 1과목 이상씩 이수하여야 한다.
3) 일반교양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영역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2016학번부터 적용)
4) 편입생이 이공계기초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는 수강신청하기 전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이공계기초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6) 교수면담 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7) 3학년, 4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은 이수해야한다(전공학점에 포함)

<표-교양 1>(개정 2019. 3. 1, 2020. 3. 1)

인 성 교 양(‘함’의 영역)

과목명	학점	시수	비고
인간과 기독교 세계와 기독교	2	2	택1(1,2학년)
벤처와 창업가정신 벤처와 리더십	2	2	택1(1,2학년)
사회봉사의 이해 ◈	1(P)	1	1학년(2019학번부터)
사회봉사의 실천	0(P)	30(시간)	전학년(2019학번부터)
채플	0(P)	1	1,2 학년(4개학기)
대학생활설계와 비전 1	1	1	1학년 1학기
대학생활설계와 비전 2	1	1	1학년 2학기
계	7+P		

◈ 온라인 사이버

<표-교양 2>(개정 2019. 3. 1. 2019. 8. 26, 2020. 3. 1, 2020. 3. 16. 2023. 3. 1, 2024. 3. 1)

기 초 교 양(‘앎’의 영역)

<table>
<tr><th>세부
영역</th><th colspan="2">과목명</th><th>학점</th><th>시수</th><th colspan="3">이수 구분</th><th>이수 학년</th></tr>
<tr><td rowspan="7">기초
역량</td><td colspan="2">대학외국어회화 1</td><td>2</td><td>2</td><td rowspan="4">공통
필수</td><td rowspan="4">8</td><td rowspan="7">8-12</td><td rowspan="2">1학년
영어/중국어 선택</td></tr>
<tr><td colspan="2">외국어와비판적사고</td><td>2</td><td>2</td></tr>
<tr><td colspan="2">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td><td>2</td><td>2</td><td>1학년</td></tr>
<tr><td colspan="2">AI와컴퓨팅사고력</td><td>2</td><td>2</td><td>1학년</td></tr>
<tr><td colspan="2">대학외국어회화 2</td><td>2</td><td>2</td><td rowspan="3">학과
선택</td><td rowspan="3">0-4</td><td>2학년</td></tr>
<tr><td colspan="2">논리적사고와표현</td><td>2</td><td>2</td><td>1학년</td></tr>
<tr><td colspan="2">독서와토론</td><td>2</td><td>2</td><td>3학년</td></tr>
<tr><td rowspan="14">대학
기초</td><td>인문사회대학</td><td>인문과 SW활용</td><td>2</td><td>2</td><td rowspan="14">단과대
필수</td><td colspan="2" rowspan="14">2-9</td><td>2학년</td></tr>
<tr><td>경영대학</td><td>경영과 SW활용</td><td>2</td><td>2</td><td>2학년</td></tr>
<tr><td>예체능대학</td><td>문화예체능과 SW활용</td><td>2</td><td>2</td><td>2학년</td></tr>
<tr><td rowspan="5">생명보건대</td><td>생명보건과 SW활용</td><td>2</td><td>2</td><td>2학년</td></tr>
<tr><td>화학의이해</td><td>2</td><td>2</td><td>1학년</td></tr>
<tr><td>화학의이해 실험</td><td>1</td><td>2</td><td>1학년</td></tr>
<tr><td>생명의이해</td><td>2</td><td>2</td><td>1학년</td></tr>
<tr><td>생명의이해 실험</td><td>1</td><td>2</td><td>1학년</td></tr>
<tr><td rowspan="3">공과대학</td><td>공학과 SW활용</td><td>2</td><td>2</td><td>2학년</td></tr>
<tr><td>수학의이해 1</td><td>3</td><td>3</td><td>1학년</td></tr>
<tr><td>수학의이해 2</td><td>3</td><td>3</td><td>1학년</td></tr>
<tr><td rowspan="3">AI융합대학</td><td>융합과 SW활용</td><td>2</td><td>2</td><td>2학년</td></tr>
<tr><td>수학의이해 1</td><td>3</td><td>3</td><td>1학년</td></tr>
<tr><td>수학의 이해 2</td><td>3</td><td>3</td><td>1학년</td></tr>
<tr><td colspan="3">계</td><td colspan="5">10-16</td></tr>
</table>

※ 외국어와비판적사고는 영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
※ 선택필수 이수영역은 학부/전공에서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며, 학생이 개별 선택하지 않음
※ 학부/전공에서 교육과정표에 정한 과목만 이수하며, 초과 학점 인정하지 않음
※ 학부/전공은 교양학점 중 일반교양 학점 비율이 40%이상 되도록 기초교양 학점을 구성해야 함 (인증학과 예외)

<표-교양3> (개정 2020. 3. 1., 2021. 3. 1., 2022. 8. 25, 2024. 3. 1)

일 반 교 양('삶'의 영역)

영 역	이수학점	비 고
1영역 : 인간과 예술	18-21	- 최대 22학점까지 이수 가능 (단, 학과 지정 이상 수강한 학점은 자유로 인정) - 각 영역별 1개 필수 이수를 원칙으로 함 - 교양학점 중 일반교양 비율 40%이상 편성 - 이수학년: 전학년(단, 4영역은 2학년 이상 이수 가능) *2021학년도 이전 학번 대상자 중 일반교양 4영역 이수시 타영역(1~3영역) 이수로 대체 인정
2영역 : 사회와 문화		
3영역 : 과학과 기술		
4영역 : 융복합		

일반교양('삶'의 영역) 교과목 일람표				
영역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영역 (인간과 예술)	4차산업혁명시대의신약성서읽기	2	아름다운한국소설	2
	가치로서의자연과인간	2	알기쉬운인간의이해	2
	공학윤리	3	에어로빅댄스와유산소운동이해	2
	그리스로마신화	2	영어미디어비판적담론	2
	근육이완훈련과스트레스관리법	2	영화분석과리뷰	2
	기초생활일본어	2	예술과생활	2
	기초일본어회화	2	유럽음악이야기	2
	기초중국어	2	인간공학	2
	기획문서작성법	2	인간의자기이해	2
	대중문화와대중예술	2	전쟁과인간	2
	독일어테마산책	2	중국음악예술의이해	2
	동양사상과고전	2	지능과창의성개발	2
	매주떠나는문학기행	2	창의적사고와문제해결	3
	문화와여행	2	초급생활독일어	2
	미래사회와협상의기술	2	초급영작문	2
	미술감상론	2	취업중국어	2
	비즈니스중국어	2	카오스와프랙탈	2
	[FL]서양고전의현대적이해	2	컬러의이해	2
	[PBL]생각정리의기술	2	컴퓨터코딩과영어	3
	생활속두뇌력개발	2	퍼스널트레이닝과바디세이핑	2
	성격유형과비전탐구	3	폭력과범죄예방호신술	2
	성서와기독교정신	2	표현과의사소통기술	3
	세계사	2	한국사	2
	세계음악공연의이해	2	한국어읽기1	2
	스타일과트렌드(A)	2	한국어읽기2	2
	스페이스마케팅	2	한국음악과문화	2
	실용생활중국어	2	한중비즈니스언어예절비교	2
	심신균형미학과요가필라	2	현대미술과애니메이션	2
2영역 (사회와	e-비즈니스의이해와성공전략	2	알기쉬운청년경제	2
	경영학기초	2	영미문화의이해	3
	경제속의 환율 이야기	2	예비부모교육	3
	경제의기초와생활	2	유럽문화오디세이	2
	골프문화의이해	2	융합적사고를 위한 명저탐색	2
	공직사회와실무행정	2	음악으로확장하는사유의세계	2
	교육학의이해와활용	2	이미지로읽는중국	2
	국기태권도	2	이야기형법	2

일반교양('삶'의 영역) 교과목 일람표				
영역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문화)	국제금융기구 이해	3	이탈토탈(이탈리아문화기행)	2
	[PBL]글로벌이슈	2	일본의문화와사회	3
	금융의이해와 활용	2	일본학	2
	기업가정신	2	젠더심리학/여성과남성에대한심리적이해	2
	기업가정신과창업기초	2	중국경제지리	2
	[PBL]나의가치혁신	2	중국의문화코드	2
	뉴스포츠의이론과실제	2	중국지역문화상식	3
	[나눔]디베이트스킬	2	창의적 사고와 기법	2
	리더십	2	청소년리더십개발의이론과실제	2
	문화창업마케팅	2	초대교회리더십	3
	미디어 현상과 콘텐츠 기획	2	커뮤니케이션과인간관계	2
	미디어읽기와토론	2	탁구이론과실제	2
	벤처와인터넷비즈니스	2	테니스이론과실제	2
	부동산과생활경제	2	품질경영학	3
	생활법률	2	플랫폼 비즈니스와 벤처	3
	서양중세문화	2	한국민속의이해	3
	성서인물과벤처마인드	2	한국시사평론	2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미래	2	한국어듣기	3
	세계사를바꾼사건들과벤처정신	3	한국어말하기1	2
	세계의식품과문화	2	한국어말하기2	2
	세계의음식기행	2	한국어쓰기	2
	세계의음식문화비교	2	한국의개황	3
	스마트한 디자인 생활	2	혁신가리더십	3
	스토리노믹스 마케팅 전략	2	현대경영과 고전	3
	스포츠매니지먼트/스폰서십	2	현대도시의이해	3
	스피치커뮤니케이션	2	현대사회와가족의이해	2
	시니어비즈니스와마케팅	3	현대사회와스포츠	3
	시사분석을통한사회의이해	2	현대사회와인간복지	3
	실전경영의이해1	2	현대사회와패션문화	3
	심리학과삶	2	현대중국사회의이해	3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	현대통상의이해	2
	알기쉬운시장경제이야기	2		
3영역 (과학과 기술)	21세기녹색환경문화	2	생활속의행렬	2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이해	3	성의과학	2
	4차산업혁명시대의컴퓨터과학	3	세상을바꾸는복지과학기술	2
	가상현실과비즈니스 모델	2	[AI]스마트폰앱개발의이해	2
	건강과바이오정보기술	3	[나눔]소프트웨어창의나눔	3
	게임의역사	2	스포츠과학	2
	공학경영	2	스포츠테크	2
	과학기술영어	2	슬로우푸드와건강	2
	과학기술의새로운지평	2	식품과의약품개발의역사	2
	과학자와종교	2	신체발육발달과운동	2
	과학적소통을위한수학	2	실생활과수학	2

일반교양('삶'의 영역) 교과목 일람표				
영역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기능성식품과질병예방	2	약이되는음식의맛과멋	2
	기술열두이야기	3	영상편집활용1인미디어만들기	2
	내몸안의지식여행인체생리	2	인간과환경	2
	디지털리터러시와앱의이해	2	인간두뇌의이해	3
	디지털생물학	2	인간질병의이해	2
	맞춤형식생활관리	3	[AI]인공지능의이해와활용	2
	미래사회와데이터가공	2	정보통신및정보화사회	2
	미생물과인간생활	3	테마가있는생활과학(화학,생물)	2
	바이오기술의이해	3	테마가있는포토샵	2
	비만과식생활	2	통계로 세상 관찰하기	2
	[AI]빅데이터분석과관리	2	특허법과공학기술	2
	사진과시네마토그래피	2	한중인적자원개발	2
	생명공학과인간의미래	2	현대인의식생활과건강	3
	생명과학의현대적이해	2	환경과조경	2
	생활속독성물질이야기	3	환경변화와미래과학	2
	생활속의천연물소재	2		
4영역 (융복합)	[팀티칭] AI 시대의인간과기술	3	[FL]미디어로다시읽는영미명작	2
	[팀티칭]AI 시대의인간과사회	3	[PBL]빅데이터로배우는성격심리학	2
	4차산업혁명과문화융합(예술을통한벤처워크샵)	2	빅데이터생물학	2
	4차산업혁명과바이오세상	3	빅데이터인문학	2
	4차산업혁명과유비쿼터스사회	3	[PBL]사물인터넷과미래생활(벤처창업)	3
	[FL]4차산업혁명시대의그림책읽기	2	생로병사의경제학	2
	[FL] 가상현실과인간의이해	2	[팀티칭] 소통의인문학:문학읽고철학하기	2
	과학과윤리	2	[팀티칭]스마트콘텐츠의청각적스토리텔링	2
	과학기술과사회문화	2	[팀티칭]스피치와인문학	2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2	스포츠인문학	2
	과학문명의이해	2	[팀티칭]아두이노로보는IoT세상	2
	국제사회와나	2	아산의이해	2
	[FL]공연영상미디어와치유	3	[PBL]알기쉬운문화활동기획	3
	글로벌시대의한국	2	[PBL]영화속생명공학기술과생명윤리이야기	3
	기후변화와환경보건	3	영화와법률	2
	노인복지와벤처	2	영화읽고철학하기	2
	뉴스를활용한비판적사고교육	2	[팀티칭]우리몸의이해와생활안전	2
	다문화와다양성	2	유럽문화와예술로의초대	2
	[팀티칭]동아시아의예술과문화	2	인공지능(AI)과생체공학기술의이해	2
	로봇윤리의이해	2	자유윤리와경제	3
	명화로읽는서양의역사	2	창의적사고와디자인	2
	문학과영화	2	천안의이해	2
	문화로만나는프랑스어회화	2	테크노인문학	2
	문화로배우는이탈리아어	2	한중문화비교탐방	2
	문화속의과학기술과음악	3	현대사회의갈등과공존	2

※ 단, 미래융합대학은 제외한다.

<표-기초1> <삭제 2020. 3. 1>

<표-성적1>(개정 2017. 9. 1, 2024. 3. 1)

출 석 성 적 조 견 표

[15주기준]

결 석 시간수	주 당 시 간 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	15시간	18시간
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	16	18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	12	16	17	18	18	19	19	19	19	19	19	20
3	8	14	16	17	18	18	19	19	19	19	19	19
4	4	12	15	16	17	17	18	18	18	19	19	19
5	출석미달F	10	13	15	16	17	18	18	18	18	19	19
6		8	12	14	15	16	17	18	18	18	18	19
7		6	11	13	14	15	17	17	17	18	18	18
8		4	9	12	14	15	16	17	17	17	18	18
9		2	8	11	13	14	16	16	16	17	18	18
10		출석미달F	7	10	12	13	15	16	16	17	17	18
11			5	9	11	13	15	16	16	16	17	18
12			4	8	10	12	14	15	15	16	17	17
13			3	7	10	11	14	15	15	16	17	17
14			1	6	9	11	13	14	14	15	16	17
15			출석미달F	5	8	10	13	14	14	15	16	17
16				4	7	9	12	13	14	15	16	16
17				3	6	9	12	13	13	14	15	16
18				2	6	8	11	12	13	14	15	16
19				1	5	7	11	12	12	14	15	16
20				출석미달F	4	7	10	12	12	13	15	16
21					3	6	10	11	12	13	14	15
22					2	5	9	11	11	13	14	15
23					2	5	9	10	11	12	14	15
24					1	4	8	10	10	12	14	15
25					출석미달F	3	8	9	10	12	13	14
26						3	7	9	10	11	13	14
27						2	7	8	9	11	13	14
28						1	6	8	9	11	13	14
29						1	6	8	8	10	12	14
30						출석미달F	5	7	8	10	12	13
31							5	7	8	10	12	13
32							4	6	7	9	11	13
33							4	6	7	9	11	13
34							3	5	6	9	11	12
35							3	5	6	8	11	12
36							2	4	6	8	10	12
37							2	4	5	8	10	12
38							1	4	5	7	10	12
39							1	3	4	7	10	11
40							출석미달F	3	4	7	9	11
41								2	4	6	9	11
42								2	3	6	9	11
43								1	3	6	9	10
44								1	2	5	8	10
45								출석미달F	2	5	8	10
46									2	5	8	10
47									1	4	7	10
48									1	4	7	9

[15주기준]

결 석 시간수	주 당 시 간 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	15시간	18시간
49									1	4	7	9
50									출석미달F	3	7	9
51										3	6	9
52										3	6	8
53										2	6	8
54										2	6	8
55										2	5	8
56										1	5	8
57										1	5	7
58										1	5	7
59										1	4	7
60										출석미달F	4	7
61											4	6
62											3	6
63											3	6
64											3	6
65											3	6
66											2	5
67											2	5
68											2	5
69											2	5
70											1	4
71											1	4
72											1	4
73											1	4
74											1	4
75											1	3
76											출석미달F	3
77												3
78												3
79												2
80												2
81												2
82												2
83												2
84												1
85												1
86												1
87												1
88												1
89												1
90												1
91												출석미달F

* 지각, 조퇴3회시1시수결석처리

<표-성적2>(신설 2017. 9. 1)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표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평점평균	환산점수
4.5	100	4	94.29	3.5	88.57	3	82.86	2.5	77.14	2	71.43	1.5	65.71	1	60.00	0.5	54.29
4.49	99.89	3.99	94.17	3.49	88.46	2.99	82.74	2.49	77.03	1.99	71.31	1.49	65.60	0.99	59.89	0.49	54.17
4.48	99.77	3.98	94.06	3.48	88.34	2.98	82.63	2.48	76.91	1.98	71.20	1.48	65.49	0.98	59.77	0.48	54.06
4.47	99.66	3.97	93.94	3.47	88.23	2.97	82.51	2.47	76.80	1.97	71.09	1.47	65.37	0.97	59.66	0.47	53.94
4.46	99.54	3.96	93.83	3.46	88.11	2.96	82.40	2.46	76.69	1.96	70.97	1.46	65.26	0.96	59.54	0.46	53.83
4.45	99.43	3.95	93.71	3.45	88.00	2.95	82.29	2.45	76.57	1.95	70.86	1.45	65.14	0.95	59.43	0.45	53.71
4.44	99.31	3.94	93.60	3.44	87.89	2.94	82.17	2.44	76.46	1.94	70.74	1.44	65.03	0.94	59.31	0.44	53.60
4.43	99.20	3.93	93.49	3.43	87.77	2.93	82.06	2.43	76.34	1.93	70.63	1.43	64.91	0.93	59.20	0.43	53.49
4.42	99.09	3.92	93.37	3.42	87.66	2.92	81.94	2.42	76.23	1.92	70.51	1.42	64.80	0.92	59.09	0.42	53.37
4.41	98.97	3.91	93.26	3.41	87.54	2.91	81.83	2.41	76.11	1.91	70.40	1.41	64.69	0.91	58.97	0.41	53.26
4.4	98.86	3.9	93.14	3.4	87.43	2.9	81.71	2.4	76.00	1.9	70.29	1.4	64.57	0.9	58.86	0.4	53.14
4.39	98.74	3.89	93.03	3.39	87.31	2.89	81.60	2.39	75.89	1.89	70.17	1.39	64.46	0.89	58.74	0.39	53.03
4.38	98.63	3.88	92.91	3.38	87.20	2.88	81.49	2.38	75.77	1.88	70.06	1.38	64.34	0.88	58.63	0.38	52.91
4.37	98.51	3.87	92.80	3.37	87.09	2.87	81.37	2.37	75.66	1.87	69.94	1.37	64.23	0.87	58.51	0.37	52.80
4.36	98.40	3.86	92.69	3.36	86.97	2.86	81.26	2.36	75.54	1.86	69.83	1.36	64.11	0.86	58.40	0.36	52.69
4.35	98.29	3.85	92.57	3.35	86.86	2.85	81.14	2.35	75.43	1.85	69.71	1.35	64.00	0.85	58.29	0.35	52.57
4.34	98.17	3.84	92.46	3.34	86.74	2.84	81.03	2.34	75.31	1.84	69.60	1.34	63.89	0.84	58.17	0.34	52.46
4.33	98.06	3.83	92.34	3.33	86.63	2.83	80.91	2.33	75.20	1.83	69.49	1.33	63.77	0.83	58.06	0.33	52.34
4.32	97.94	3.82	92.23	3.32	86.51	2.82	80.80	2.32	75.09	1.82	69.37	1.32	63.66	0.82	57.94	0.32	52.23
4.31	97.83	3.81	92.11	3.31	86.40	2.81	80.69	2.31	74.97	1.81	69.26	1.31	63.54	0.81	57.83	0.31	52.11
4.3	97.71	3.8	92.00	3.3	86.29	2.8	80.57	2.3	74.86	1.8	69.14	1.3	63.43	0.8	57.71	0.3	52.00
4.29	97.60	3.79	91.89	3.29	86.17	2.79	80.46	2.29	74.74	1.79	69.03	1.29	63.31	0.79	57.60	0.29	51.89
4.28	97.49	3.78	91.77	3.28	86.06	2.78	80.34	2.28	74.63	1.78	68.91	1.28	63.20	0.78	57.49	0.28	51.77
4.27	97.37	3.77	91.66	3.27	85.94	2.77	80.23	2.27	74.51	1.77	68.80	1.27	63.09	0.77	57.37	0.27	51.66
4.26	97.26	3.76	91.54	3.26	85.83	2.76	80.11	2.26	74.40	1.76	68.69	1.26	62.97	0.76	57.26	0.26	51.54
4.25	97.14	3.75	91.43	3.25	85.71	2.75	80.00	2.25	74.29	1.75	68.57	1.25	62.86	0.75	57.14	0.25	51.43
4.24	97.03	3.74	91.31	3.24	85.60	2.74	79.89	2.24	74.17	1.74	68.46	1.24	62.74	0.74	57.03	0.24	51.31
4.23	96.91	3.73	91.20	3.23	85.49	2.73	79.77	2.23	74.06	1.73	68.34	1.23	62.63	0.73	56.91	0.23	51.20
4.22	96.80	3.72	91.09	3.22	85.37	2.72	79.66	2.22	73.94	1.72	68.23	1.22	62.51	0.72	56.80	0.22	51.09
4.21	96.69	3.71	90.97	3.21	85.26	2.71	79.54	2.21	73.83	1.71	68.11	1.21	62.40	0.71	56.69	0.21	50.97
4.2	96.57	3.7	90.86	3.2	85.14	2.7	79.43	2.2	73.71	1.7	68.00	1.2	62.29	0.7	56.57	0.2	50.86
4.19	96.46	3.69	90.74	3.19	85.03	2.69	79.31	2.19	73.60	1.69	67.89	1.19	62.17	0.69	56.46	0.19	50.74
4.18	96.34	3.68	90.63	3.18	84.91	2.68	79.20	2.18	73.49	1.68	67.77	1.18	62.06	0.68	56.34	0.18	50.63
4.17	96.23	3.67	90.51	3.17	84.80	2.67	79.09	2.17	73.37	1.67	67.66	1.17	61.94	0.67	56.23	0.17	50.51
4.16	96.11	3.66	90.40	3.16	84.69	2.66	78.97	2.16	73.26	1.66	67.54	1.16	61.83	0.66	56.11	0.16	50.40
4.15	96.00	3.65	90.29	3.15	84.57	2.65	78.86	2.15	73.14	1.65	67.43	1.15	61.71	0.65	56.00	0.15	50.29
4.14	95.89	3.64	90.17	3.14	84.46	2.64	78.74	2.14	73.03	1.64	67.31	1.14	61.60	0.64	55.89	0.14	50.17
4.13	95.77	3.63	90.06	3.13	84.34	2.63	78.63	2.13	72.91	1.63	67.20	1.13	61.49	0.63	55.77	0.13	50.06
4.12	95.66	3.62	89.94	3.12	84.23	2.62	78.51	2.12	72.80	1.62	67.09	1.12	61.37	0.62	55.66	0.12	49.94
4.11	95.54	3.61	89.83	3.11	84.11	2.61	78.40	2.11	72.69	1.61	66.97	1.11	61.26	0.61	55.54	0.11	49.83
4.1	95.43	3.6	89.71	3.1	84.00	2.6	78.29	2.1	72.57	1.6	66.86	1.1	61.14	0.6	55.43	0.1	49.71
4.09	95.31	3.59	89.60	3.09	83.89	2.59	78.17	2.09	72.46	1.59	66.74	1.09	61.03	0.59	55.31	0.09	49.60
4.08	95.20	3.58	89.49	3.08	83.77	2.58	78.06	2.08	72.34	1.58	66.63	1.08	60.91	0.58	55.20	0.08	49.49
4.07	95.09	3.57	89.37	3.07	83.66	2.57	77.94	2.07	72.23	1.57	66.51	1.07	60.80	0.57	55.09	0.07	49.37
4.06	94.97	3.56	89.26	3.06	83.54	2.56	77.83	2.06	72.11	1.56	66.40	1.06	60.69	0.56	54.97	0.06	49.26
4.05	94.86	3.55	89.14	3.05	83.43	2.55	77.71	2.05	72.00	1.55	66.29	1.05	60.57	0.55	54.86	0.05	49.14
4.04	94.74	3.54	89.03	3.04	83.31	2.54	77.60	2.04	71.89	1.54	66.17	1.04	60.46	0.54	54.74	0.04	49.03
4.03	94.63	3.53	88.91	3.03	83.20	2.53	77.49	2.03	71.77	1.53	66.06	1.03	60.34	0.53	54.63	0.03	48.91
4.02	94.51	3.52	88.80	3.02	83.09	2.52	77.37	2.02	71.66	1.52	65.94	1.02	60.23	0.52	54.51	0.02	48.80
4.01	94.40	3.51	88.69	3.01	82.97	2.51	77.26	2.01	71.54	1.51	65.83	1.01	60.11	0.51	54.40	0.01	48.69

* 백분위 환산식 : 60+((평점평균-1)*40/3.5)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표-인정1>(개정 2017. 9. 1, 2020. 3. 1., 2020. 9. 1. 2021. 3. 1, 2022. 3. 1, 2023. 8. 28, 2024. 3. 1)

인 정 영 역

구분	인정교과목	인 정 기 준	인정학점	비 고
입학전 교육	예비대학과정	예비대학과정 교과목 이수자	1~3	1학년 1학기 인정 (최대 3학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16시간 이수	1	
		32시간 이수	2	
		48시간 이수	3	
교과 연계 활동	K-MOOC	K-MOOC 강좌 이수	1	학기내 1학점 인정 (최대 3학점)
	선행학습경험	선행학습교과(RPL)	1	최대 24학점 인정 (근무경력 최대 6학점 포함)
			2	
			3	
			6	
			9	
			12	
해외	해외어학연수	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4주 이상 어학연수	2	재학중 1회인정
		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6주 이상 어학연수	4	
	교환학생	본교와 협약된 외국대학에서 1학기 또는 2학기 유학	6~36	재학중 1회인정 (학기당 최대 18학점)
군 훈련 및 복무	특기병교육훈련	군 복무 중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자격 이수 교육 활동	2	재학중 1회인정
	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의 동·하계 입영훈련 참여	1	재학중 4회인정
	군사학교육	학군사관후보생 대상의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군사학 교육과정 이수	2	재학중 4회 인정
현장 실습	단기기업체 현장실습	학생의 실무 및 실습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방학 중 16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상 현장실습	2	재학중 3회인정 (최대 8학점)
		학생의 실무 및 실습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방학 중 32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상 현장실습	4	
	장기 국내외기업체 현장실습	3개월(12주) 이상 4개월(16주) 미만	12	재학중 1회인정 (최대 15학점)
		4개월(16주) 이상	15	
취업 직무 체험	전공심화취업 교육과정	40시간 이상	1	재학중 2회인정 (최대 6학점)
		90시간 이상	2	
		150시간 이상	3	
		300시간 이상	6	
	직무체험	80시간 기준 1학점, 최대 4학점(320시간)	1~4	최대 4학점
창업 대체 학점제	창업실습	- 전임교원 지도교수로부터 학기별 3회 이상 지도를 받은 창업동아리 또는 팀 - 실습기간 종료 후 1주 내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 지도교수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P/F 부여	3	재학중 2회인정
	창업학기제	예비창업학기 / 12주~15주 수행 / - 창업학기 신청 승인 취득 - 매월 말일까지 창업학기 월별보고서와 주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창업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12	재학중 1회인정
		초기창업학기 / 12주~15주 수행 / - 창업학기 신청 승인 취득 - 매월 말일까지 창업학기 월별보고서와 주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창업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12	

구분	인정교과목	인 정 기 준			인정 학점	비 고
				지도교수 승인 후 직접 제출 - 결과보고서 평가 후 P/F부여		

※ 1. 인정영역의 인정학점은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단, 교환학생, 선행학습경험, 현장실습학기제, 창업학기제, 군사학교육(ROTC)은 예외로한다.
2. 인정영역으로 취득한 학점은 취득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예비대학과정」, 「특기병교육훈련」 학점인정은 예외로 한다.
3. 해외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국제협력처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대학에 한 한다.
4. 직무체험 학점 인정은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조기 진로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다.
5. 선행학습경험을 통한 학점인정은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표-봉사1>(개정 2018. 3. 1)

사 회 봉 사 활 동 범 위

봉사활동분야	봉사활동내용
VMS, 1365	보건복지부 VMS와 행정자치부 1365에 등록되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봉사활동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함.>
의료기관	의료기관(대학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봉사활동
NGO	NGO에서의 봉사활동
교내봉사	교목실, 대학본부, 부속기관, 학과/전공 등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헌혈	헌혈(VMS 인증서, 헌혈증 등 헌혈 증빙서류 제출 시 1회당 4시간 인정)

<표-교직1>

교직과정 교육과정표

구분	이수학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학년	학기	교 과 목	학점	교 과 목	학점	교 과 목	학점
교직 이론	2-4	1/2	교육학개론	2	교육학개론	2	교육학개론	2
	2-4	1/2	교육심리학	2	교육심리	2	교육심리	2
	2-4	1/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2-4	1/2	교육사회학	2	교육사회	2	교육사회	2
	2-4	1/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교육평가	2	교육평가	2
	2-4	1/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4	1/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4	1/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2
	2-4	1/2			생활지도	2		
교과 교육	2-4	1/2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				
	2-4	1/2	교과교육론	2				
교직 소양	3	2			교직실무	2	교직실무	2
	4	2			특수교육학개론	2	특수교육학개론	2
	3	1					생활지도(학교폭력의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 실습	4	1	교육실습(4주)	2	교육실습(4주)	2	교육실습(4주)	2
	2~4학년				교육봉사(60시간)	2	교육봉사(60시간)	2
현장 실습	3~4학년		산업체현장실습(4주) 공업계표시과목학과	P	산업체현장실습(4주) 공업계표시과목학과	P	산업체현장실습(4주) 공업계표시과목학과	P
- 적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수(2017. 08 졸업생부터)								

※ 1. 교직과정은 수강신청은 입학년도(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를 기준으로 함에 유념하고 “이수학년 및 학기”와 상관없이 이수 가능
예) 2008학년도 신입학자가 휴학 후 2010학년도 2학년에 복학하여 선발된 경우 “2010(선발년도)-1=2009”로 2009학년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2. 교직이론영역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7과목 이상(14학점 이상) 선택 이수. 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6과목 이상(12학점 이상) 선택 이수
3. 교과교육영역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 3과목 이상(8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
4. 교직소양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직소양 분야 2과목 이상(4학점 이상) 필수. 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3과목 이상(6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
5. 교육실습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필수

<표-교직2>(개정 2019. 3. 1, 2020. 3. 1)

교직과정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 이수영역 또는 과목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언어지도,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아동미술, 유아음악교육, 보유교사론, 놀이지도, 아동건강 및 안전관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부모교육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심리검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체, 청소년심리및상담, 학습심리, 이상심리
영어영문학학과	영어	영어교과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문법1,2 영어회화, 영어작문1,2,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영미산문의이해
산업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심리학입문, 심리검사, 성격심리,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체, 학습심리학, 이상심리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영양학개론, 생애주기영양학, 단체급식관리및실습, 식품위생학(이상 5과목 필수), 영양판정및실험, 식품학개론 , 실험조리및관능평가, 식사요법및실습(2과목 선택)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건강사정/건강사정실습, 아동건강간호학/아동건강간호학실습, 성인건강간호학/성인건강간호학실습, 정신건강간호학/정신건강간호학실습, 지역사회건강간호학/지역사회건강간호학실습, 응급간호학/응급간호학실습, 모성건강간호학/모성건강간호학실습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 디자인표현기법, 시각적발상1,2 , 미디어정보디자인1,2, 그래픽디자인1,2, 광고디자인1,2, 브랜드패키지1,2, 그래픽프로젝트1,2,
문화예술학부(연극트랙)	연극영화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서양연극사, 연극과커뮤니케이션, 화술, 연극제작실습, 장면연구와연기1·2, 텍스트읽기와분석, 프로젝트연기1,2

<표-교직3> (개정 2020. 3. 1)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대학	학과(전공)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비고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	
	산업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비교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비교과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사범계
생명보건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비교과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비교과
예체능대학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	
	공연예술학부 연극트랙	연극영화	

<표-교직4>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적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2017. 08 졸업생부터) ※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표-평생1>

평생교육사 과정 교육과정표

영 역	교 과 목	시수	학점	비 고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3	3	
	평생교육경영론	3	3	
	평생교육방법론	3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3	
	평생교육실습	-	3	4주간
선택과목	여성교육론	3	3	
	청소년교육론	3	3	
	상담심리학	3	3	
	인적자원개발론	3	3	
	성인학습 및 상담	3	3	

<표-벤처1>(삭제 2017. 9. 1)

<표-연계1> (개정 2020. 3. 1, 2022. 3. 1, 2023. 2. 6, 2023. 3. 1, 2023. 8. 28, 2024. 3. 1)

연계전공 · 융합트랙

· 연계전공이란 둘 이상의 전공 및 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복수(부)전공 또는 마이크로 디그리로 운영되며 최소전공은 32(21)학점 또는 9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 융합트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않은 전공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복수(부)전공 또는 마이크로디그리로 운영되며 최소전공은 32(21)학점 또는 9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1. 연계전공 교과목 및 이수기준

<table>
<tr><th rowspan="2">전 공</th><th colspan="3">개 설 교 과 목</th><th colspan="3">이 수 기 준</th></tr>
<tr><th>개설학부(과)</th><th colspan="2">교 과 목 명</th><th>복수전공
(32학점)</th><th>부전공
(21학점)</th><th>마이크로
디그리
(9학점)</th></tr>
<tr><td rowspan="3">가스안전공학</td><td rowspan="2">안전소방학부</td><td colspan="2">가스안전공학실무, 안전성평가, 연소학, 방폭공학, 방폭공학실험, 위험물질화학, 위험물질화학실험, 가스설비학, 가스계측공학</td><td rowspan="3">각 전공에서 최소2과목 이상씩 수강</td><td rowspan="3">각 영역에서 최소1과목이상</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연소공학원론, 가스방재공학, 전기방폭공학, 가스안전설계(CAD)1, 가스안전설계(CAD)2</td></tr>
<tr><td>화학공학과</td><td colspan="2">화공열역학, 유체역학, 가스공학 및 설계, 가스에너지공학, 가스에너지재료학</td></tr>
<tr><td rowspan="4">스마트팩토리</td><td rowspan="2">빅데이터경영공학부</td><td>SW융합 전공기초</td><td>SW융합 전공심화</td><td rowspan="4">SW융합 전공기초에서 14학점, SW융합 전공심화에서 18학점 이상 수강</td><td rowspan="4">SW융합 전공기초에서 9학점, SW융합 전공심화에서 12학점 이상 수강</td><td rowspan="4">스마트팩토리 연계전공 내 교과목 9학점* 이상

*본인 소속이 아닌 타 학과 연계전공 과목을 최소 1개 이상 포함</td></tr>
<tr><td>생산및운영관리1, CAD/CAM, 생산및운영관리2, 제품개발프로세스및네트워크협력사관리, 스마트품질관리시스템</td><td>스마트생산자동화시스템, 지능형IoTSW, 스마트팩토리IoT품질관리시스템</td></tr>
<tr><td>컴퓨터공학부</td><td>논리회로와스마트센서설계, 데이터과학및분석, 운영체제및실습</td><td>머신러닝, 빅데이터컴퓨팅, 스마트융합시스템</td></tr>
<tr><td>기계자동차공학부</td><td>3D CAD</td><td></td></tr>
<tr><td rowspan="4">스마트
모빌리티</td><td>컴퓨터공학부</td><td>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td><td>기계학습</td><td rowspan="4">SW융합 전공기초에서 14학점, SW융합 전공심화에서 18학점 이상 수강</td><td rowspan="4">SW융합 전공기초에서 9학점, SW융합 전공심화에서 12학점 이상 수강</td><td rowspan="4">스마트모빌리티 연계전공 내 교과목 9학점* 이상

*본인 소속이 아닌 타 학과 연계전공 과목을 최소 1개 이상 포함</td></tr>
<tr><td>전자융합공학부</td><td>마이크로프로세서, 정보신호처리</td><td>통신시스템, 자동제어, 영상처리공학1</td></tr>
<tr><td>기계자동차공학부</td><td>미래자동차(캡스톤디자인)</td><td>센서공학</td></tr>
<tr><td>(개설학과 미정)</td><td>스마트모빌리티의이해</td><td>자율주행특론, 자율주행시스템설계, 스마트모바일응용</td></tr>
<tr><td rowspan="3">반도체공학</td><td>전자융합공학부</td><td colspan="2">기초프로그래밍, 응용프로그래밍, 광전자공학, 반도체디스플레이재료, 자동제어, 반도체공정실습1,2, 반도체공학, 자동제어응용, 반도체소자시뮬레이션및응용, VLSL설계, 인공지능과데이터분석1,2, 장비설계, 영상처리공학1, 반도체PKG기술1, 반도체제조장비, 플라즈마진공이론및실습, 전력반도체공정, 확률통계와반도체품질관리, 반도체PKG기술2, 실무특강1,2, 현장실습/인턴쉽(4주), 현장실습/인턴쉽(8주), 디지털논리회로, PKG소재기술</td><td rowspan="3">–</td><td rowspan="3">부전공
(21학점)</td><td rowspan="3">–</td></tr>
<tr><td>전자재료공학과</td><td colspan="2">전자재료물성, 나노재료및소자, 박막제조공정</td></tr>
<tr><td>화학공학과</td><td colspan="2">CAD기초및실습, 머신러닝과매트랩기초및실습, 기초반도체공정및설계, 공정제어</td></tr>
</table>

전 공	개 설 교 과 목		이 수 기 준		
	개설학부(과)	교 과 목 명	복수전공 (32학점)	부전공 (21학점)	마이크로 디그리 (9학점)
친환경 모빌리티	기계자동차공학부	프로그래밍 언어, 지능형자동차 기초실험 1,2, 자동차공학개론, 미래자동차, CAD,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 응용유체역학, 냉동특론, 동역학, 센서공학, 기계제어, 차량설계 및 실습, 차량제작 및 실습, 기계설계프로젝트1,2, 현장실습, 모빌리티응용실습, 마이크로열유체, 유공압시스템, 공기조화냉동, 전기전자개론, 진공및유체기계, 기계요소설계, 열역학실험, 스마트자동차전기실습2, 미래자동차구조실습2	–	최소 21학점 이상 수강 및 현장실습 참여	–
	자동차ICT공학과	미래자동차ICT, 센서및계측공학, 자동차전기기기1,2, 자동차기초회로실험1,2			
	전기공학과	회로이론1,2			
ICT사회환경	공통	창의적 문제해결과 리더십	최소 32학점 이상 이수, 창의적 문제해결과 리더십 필수 수강	최소 21학점 이상 이수, 창의적 문제해결과 리더십 필수 수강	–
	안전공학과	가스안전공학, 연구실안전, 방재안전, 화학공정안전공학, 방화방폭, 소방안전실무, 정보보호및사이버안전, 안전시뮬레이션실험, 위험성평가론, 위험물질화학, 화재조사론, 위험성평가실습			
	기계ICT공학과	컴퓨터과학기술, 기계공학개론, ICT개론, 기계ICT실습, IoT시스템,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이해, 스마트공장제어, 기술아이템전략, 기계ICT현장실무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정책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패키지 공정	반도체공학과	반도체PKG기초, PKG공정기술, 패키지실무세미나1, 산학프로젝트1, 산학프로젝트2, 반도체공정실습1, 반도체공정관리, PKG설비기술, 반도체테스팅, 반도체제조혁신1	복수전공 (32학점)	–	–
	로봇공학과	로봇공학, 패턴인식			
	전자공학과	자동제어, 임베디드시스템, PLC제어, 전자회로실무 디지털응용실험			
	기계자동차공학부	센서공학, 메카트로닉스및실습, 기계시스템설계			
패키지 설계	반도체공학과	반도체PKG기초, PKG공정기술, 패키지실무세미나1, 산학프로젝트1, 산학프로젝트2, 전력반도체설계(차량용반도체패키징), 패키지공정기술, 고신뢰성부품설계	복수전공 (32학점)	–	–
	전자공학과	임베디드시스템, 초고주파공학, CMOS VLSI설계, 패키지신호해석			
	기계자동차공학부	동역학, 기계제어, 열전달, CAD, 응용유체역학, 냉동특론			
패키지 재료	반도체공학과	반도체PKG기초, PKG공정기술, 패키지실무세미나1, 산학프로젝트1, 산학프로젝트2, 패키지공정기술, 반도체재료, PKG소재기술, 나노계측, 전자소재개론, 기능성소재	복수전공 (32학점)	–	–
	전자재료공학과	전자재료물성, 박막제조공정, 나노재료및소자, 전자패키지소재, 마이크로접합소재			
패키지 신뢰성	반도체공학과	반도체PKG기초, PKG공정기술, 패키지실무세미나1, 산학프로젝트1, 산학프로젝트2, 반도체제조혁신1, 반도체제조혁신2, 통계분석과반도체품질관리	복수전공 (32학점)	–	–
	전자공학과	인공지능기초, 인공지능응용, 지능형시스템, 신호및시스템, 초고주파공학			

전 공	개 설 교 과 목		이 수 기 준		
	개설학부(과)	교 과 목 명	복수전공 (32학점)	부전공 (21학점)	마이크로 디그리 (9학점)
	컴퓨터공학과	오픈소스세미나, 데이터마이닝, 컴퓨터비전,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분석과클라우드플랫폼, 소프트웨어품질검증			

2. 융합트랙 및 이수기준

트랙명	이수기준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인문빅데이터융합트랙 기술기반문화창업트랙 4차산업혁명융합트랙 비즈니스한국어통번역트랙	트랙에서 최소 32학점 이상 수강 (트랙 전공필수 12학점)	트랙에서 최소 21학점 이상 수강 (트랙 전공필수 9학점)	트랙에서 최소 9점학점 이상 수강
데이터소프트웨어융합트랙	–	트랙에서 최소 21학점 이상 수강	트랙에서 최소 15점학점 이상 수강 – 융합입문과정 필수(6학점) – 융합심화과정 선택(6학점) – 종합설계(3학점)

3. 수강원칙

- 제1전공 교과목 및 복수,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트랙 교과목과의 중복이수는 복수전공 15학점, 부전공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 연계전공과 융합트랙 교과목 중 해당과정의 신청 이전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이를 이수한 과목으로 인정한다.
- 연계전공과 융합트랙의 신청, 학점대체, 이수인정 및 학위수여 등은 복수(부)전공 이수에 준하여 실시한다.
- 연계전공과 융합트랙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인정은 단기교육과정인증 규정에 따른다.
- 비전공자의 자유로운 AI · SW융합교육 이수를 위해 융합트랙은 대학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4. DSC공유대학 융합전공

전공명	이수기준		교과목명
	복수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친환경동력시스템전공 지능형전장제어시스템전공 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전공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소부장전공 자율주행시스템전공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전공 차세대통신융합전공 모빌리티SW/AI융합전공	DSC공유대학 공동운영 교육과정에서 36학점 이상 수강	DSC공유대학 공동운영 교육과정에서 9～15학점 이상 수강	DSC공유대학 교육과정에 따름

5. 마이크로디그리

구분	개설학부(과)	이수 구분	개설 교과목	이수기준 마이크로디그리 (9학점)
AI · SW 마이크로디그리	더:함교양대학 융합학부 각 학부(과)	기초 교양	AI와컴퓨팅사고력	2학점 이수
		대학 기초	인문과SW활용, 경영과SW활용, 생명보건과SW활용, 공학과SW활용, 융합과SW활용, 문화예체능과SW활용	2학점 이수
		일반 교양 · 자유 선택	일반교양 3/4영역 교과목 중 별도 지정 교과목	5학점 이상 이수 *각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대체 가능
			일반선택 교과목 중 AISW융합트랙 및 별도 지정 교과목	
글로벌 K Culture 마이크로디그리	한국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과 더:함교양대학 융합학부	기초	미디어스토리텔링, 영미드라마와문화, 사진과시네마토그래피, 미국문학과문화, FL4차산업혁명시대의그림책읽기	이수구분별 1과목 이상 이수
		기초 심화	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영미문화산업의이해, 영미문학콘텐츠, 판타지문학, 신화와로맨스스토리텔링	
		심화 특화	인공지능기반디지털콘텐츠제작실습, 다매체교육콘텐츠제작실습	
스마트투어리즘 마이크로디그리	한국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과 더:함교양대학 융합학부	기초	문화와여행, 관광의이해	이수구분별 1과목 이상 이수 ('관광의 이해' 교과목 필수이수)
		기초 심화	Tourism English, 다문화와 글로벌한류, 한국의전통문화, 영미문화와관광	
		심화 특화	관광스토리텔링, 문화관광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한류문화기획프로젝트 스마트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에듀테크 TESOL 마이크로디그리	한국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융합학부	기초	영어문법1, 영어음성음운론, 영미아동문학, 교실영어(◆)	◆ 표시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기초 심화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영어교과교육론	
		심화 특화	영어독서지도법(◆), 영어모의수업(◆), 외국어습득론(◆)	
R&D 기획 · 전략 마이크로디그리	디지털기술경영학과 경영학부	기초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논리적사고와표현, 소프트웨어활용, 벤처와창업가정신, 벤처와기업가정신, 벤처와리더십, 컴퓨팅적사고	이수구분별 2과목 이상 이수
		심화	기술 · 시장 데이터분석, 기술전략과 R&D 기획	
ESG교양 마이크로디그리	더:함교양대학	일반 교양	문화적다양성과공존의지혜, 기업과정신과ESG, ESG기반의생태영성과그린캠퍼스형성, 소프트웨어융합ESG, ESG교육프로그램개발, 공유경제와창업, 생태적관점의평화교육, 과학과윤리, 기후변화와환경보건	

※ 연계전공 · 융합트랙 마이크로디그리 제외

<표-공학인증1>(개정 2017. 9. 1, 2020. 3. 1)

공학교육인증 심화 및 일반 프로그램 교과과정

■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이수학점 총괄표

심화프로그램(ABEEK)			일반프로그램(NON ABEEK)			
ABEEK구분	대학구분	학 점	구분			학 점
전문 교양	인성교양	5	교양 과정	인성교양		7+P
	기초교양	8~10		기초교양		8~10
	일반교양	16~18 (공학인증교양 4학점 포함)		일반교양		16~18
MSC	기초교양 전공기초(MSC) 전공과정	30~	전공 과정	전공기초		학부(과)별 기준 학점
				전공과정		59~
공학주제	전공과정	59~		복수전공	1전공	47
기타	인성교양	2+P(필수)(면담교과목(2),채플(P))			2전공	32
	일반선택	졸업학점 내	일반선택			졸업학점 내
졸업학점		128+P	졸업학점			128+P

■ 대학 교과과정에 준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교과 운영표(KEC2015 적용)

공학교육인증(EAC) 프로그램					
ABEEK구분	이수구분		교 과 목 명(학점)		비고
전문교양	인성교양		인간과기독교, 세상과기독교 택 1(2) 벤처와창업가정신, 벤처와리더십 택1(2) 사회봉사(1), 사회봉사의실천(P)		
	기초교양	기초역량(필수)	대학외국어회화Ⅰ(2), 대학외국어강독1(2)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2), 컴퓨팅적사고(2)		
		기초역량(선택)	기초역량선택교과		
	일반교양		영역별 1과목 이상 총 16~18학점 이수 (공학인증 지정교과 4학점 이상 이수)		
MSC (30~)	기초교양	대학기초	일반수학	수학의이해1,2(6), 공학과SW활용(2)	필수
	전공기초 (MSC)		이학기초분야	일반물리Ⅰ,Ⅱ 및 실험(6) 일반화학Ⅰ,Ⅱ 및 실험(6) 일반생물학Ⅰ,Ⅱ 및 실험(6) 등	실험포함 6학점 이상
			컴퓨터분야	기초 컴퓨터 교과	4학점 이내
			응용수학	미분방정식, 통계학, 수치해석, 선형대수학 등	
	전공과정		전공 개설 MSC교과		
공학주제	전공과정		전공 공통트랙, 심화트랙 / 단일전공 59학점 이상 (설계 9~12학점 포함)		
기타	인성교양		대학생활설계와비전1,2(2), 채플(P)		필수
	일반선택		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사, 일반교양 추가 학점 등		
졸업학점			128+P		

※ 공학교육인증(EAC) 프로그램은 인증기준 'KEC2015'를 준용함.

<표-학위>(개정 2018. 3. 1, 2018. 9. 4, 2019. 8. 26, 2020. 3. 1, 2020. 3. 16., 2021. 3. 1., 2021. 9. 1, 2022. 8. 25, 2024. 3. 1)

학 사 학 위

구 분	학 과 (학 부)			학 위 명	영 문 학 위 명
인문사회대학	기독교학과			기독교학사	Bachelor of Arts in Theology
	한국언어문화학과			문학사	Bachelor of Arts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Bachelor of Arts
	중국지역학과			국제학사	Bachelor of International Studies
	법경찰행정학과			법학사	Bachelor of Law
	산업심리학과			산업심리학사	Bachelor of Psychology
	사회복지학부			문학사	Bachelor of Arts
		사회복지학트랙		문학사	Bachelor of Arts
		노인복지학트랙		문학사	Bachelor of Arts
	청소년문화 · 상담학과			문학사	Bachelor of Arts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학사	Bachelor of Arts
	유아교육과			문학사	Bachelor of Arts
	항공서비스학과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국제통상학사	Bachelor of Arts in International Commerce
	경영학부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트랙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세무회계학트랙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디지털기술경영학과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생명보건대학	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제약공학과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화장품생명공학부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화장품과학트랙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생명공학트랙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Bachelor of Physical Therapy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사	Bachelor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간호학과			간호학사	Bachelor of Nursing
	동물보건복지학과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전기공학심화	공학사 (전기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시스템제어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안전소방학부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안전보건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소방방재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화학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화학공학심화	공학사 (화학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건축토목공학부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건축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건축공학심화	공학사 (건축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토목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구 분	학 과 (학 부)			학 위 명	영 문 학 위 명
	환경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환경공학심화	공학사 (환경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축학과			건축학사	Bachelor of Architecture
	기계자동차공학부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기계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기계공학심화	공학사 (기계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자동차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자동차공학심화	공학사 (자동차공학심화)	Bachelor of Science in Automotive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부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해양IT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전자재료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자동차ICT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AI 융합대학	로봇자동화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빅데이터AI학과			빅데이터 통계학사	Bachelor of Big Data and Statistics
	컴퓨터공학부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사물인터넷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인공지능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정보보호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게임소프트웨어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전자및디스플레이공학부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전자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디스플레이공학트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Bachelor of Physical Education
	골프산업학과			체육학사	Bachelor of Physical Education
	시각디자인학과			미술학사	Bachelor of Fine Arts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사	Bachelor of Fine Arts
	실내디자인학과			미술학사	Bachelor of Fine Arts
	애니메이션학과			예술학사	Bachelor of Arts
	문화영상학부	영상미디어트랙		예술학사	Bachelor of Arts
		문화콘텐츠기획트랙		예술학사	Bachelor of Arts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음악학사	Bachelor of Music
		클래식피아노트랙		음악학사	Bachelor of Music
		연극트랙		문학사	Bachelor of Arts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기계ICT공학과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사회복지상담학과			문학사	Bachelor of Arts
국제학부		국제학트랙		국제학사	Bachelor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경영학트랙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연계전공		스마트팩토리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